

월간

재정포럼 1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11월호 제173호

- 현안분석** •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 정재호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과 인력관리 방안/ 라영재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외

정책흐름 • 상속 ·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현안분석</p> <hr/> <p>정책토론포럼</p> <p>공공정책포럼</p> <p>주요국의 조세동향</p> <p>정책흐름</p> <p>재정통계</p> <p>이슈 & 포커스</p> <p>권말부록</p>	<p>02 종합부동산세제와 헌법개정 · 현진권</p> <p>06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 · 정재호</p> <p>20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과 인력관리 방안 · 라영재</p> <hr/> <p>40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p> <p>51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관리</p> <p>56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p> <p>67 상속 ·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p> <p>69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p> <p>7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3/4분기 추진상황 점</p> <p>73 경차 타시면서 세금 절약하세요</p> <p>74 경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결과</p> <p>77 10. 9월 취업자 24.9만명 증가</p> <p>80 국세통계로 본 여성 납세자의 출산 현황</p> <p>83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RFID태그 부착 · 유통 의무화</p> <p>86 GDP 대비 총조세 비중</p> <p>90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찬반’ 논쟁 외</p> <p>94 최근 5년간 『재정포럼』 총목차</p>
--	--

종합부동산세제와 헌법개정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세정책이다. 종합부동산세제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이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는 지방세인 현행 재산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에서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 세제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님은 관련 연구들에서 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과세대상자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소수의 경제적 강자에게 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면서, 추가적으로 세수도 확보할 수 있으니, 정치권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여·야당 간 정책노선에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쉽게 입법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다수결 원칙의 한계와 자유주의 헌법정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납세자의 약 2%를 차지할 정도로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대의민주주의 체계하에서의 정책수립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정책의 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제도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제와 같은 정책은 본질적으로 소수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다수결 원칙에 의할 경우에는 정책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수결 원칙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집단 의사결정 과정이지만, 다수가 소수에 경제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의사결정체계가 가지기 쉬운,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인 하이에크(Hayek)는 자유주의 헌법에는 반드시 “보편성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회의 다수결 원칙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를 위해 소수에 대한 선별적 조세부과는 자유주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제8조)에는 다수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은 특정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조세부과의 보편성(uniform)”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조세와 관련된 조항은,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와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전자는 국민의 의무를 설명한 반면, 후자는 정부의 조세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제59조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한국 헌법에서 조세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조세권한은 국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은 없다(no tax without representation)’란 서구역사에서 나타난 조세권 제약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조세부과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정신은 왕권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이미 민주주의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대에는 상징적 조항일 뿐이다.

.....
 조세법률주의 정신은
 왕권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이미 민주주의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대에는
 상징적 조항일 뿐이다.

종합부동산세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종합부동산세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실제로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종합부동산세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세대별 과세단위에 대해서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예외없이 과다한 세금부과는 헌법불일치로 판정하였다. 비록 종합부동산세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낮지만, 하이에크의 헌법논리로 조명하면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 세제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종합부동산세제가 사회구성원들을 다수와 소수로 나누어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부동산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제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지만, 경제의 효율성 증진이나 공공의 이익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제도가 사전적으로 소수에 대한 자유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한할 필요가

.....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에 “조세부과에 대한
원칙”을 우리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우리 시대의 유행어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제와 같은 소수에 대한 세금이 부유세 등의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개정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제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에 “조세부과에 대한 원칙”을 우리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헌법에서 명시한 “보편적(uniform)”이란 단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과 인력관리 방안
라영재 ·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cheung@kipf.re.kr)

부가가치세는
과세베이스가 넓고,
서울도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10% 단일세율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의 총계가
국내총생산과 같고,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경제전반의 흐름을
포괄하고 있다.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탈세 및 탈루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사전에 의하면 탈세는 허위 등 옳지 않은 수단 등을 사용하여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수단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와 구별된다.

탈세는 세법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탈세로 인해 경제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탈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작은 분야로 자원이 이동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정직한 납세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이러한 탈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 규모를 감소시켜 국민복지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세 규모, 더 나아가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학자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베이스가 넓고, 서울도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10% 단일세율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의 총계가 국내총생산과 같고,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경제전반의 흐름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탈루규모를 추정하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전체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탈루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영

세율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경우 전단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노기성·김동준(2001)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노기성·김동준(2001)은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였다.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탈루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 등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는 국민총생산에 포착되는 경제에 한정된 규모이다. 즉, 국가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가치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의 범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1. 부가가치세제 개관

가. 부가가치 범위 및 과세방법

부가가치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규정해 보자.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가치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의 범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의 범위는 GNP형, 소득형, 소비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¹⁾. 첫째, GNP형은 일정기간의 모든 최종재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된 총수입에서 중간재투입을 차감한 것을 부가가치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에는 소비뿐만 아니라 자본재 구입액과 감가상각을 포함한 총투자도 포함되어 다른 유형의 부가가치에 비해 범위가 가장 넓다. 둘째, 소득형은 총산출에서 중간투입과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것이다. 셋째, 소비형은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로 부가가치를 총산출에서 중간재투입과 총투자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으로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가산법은 부가가치

1) 자세한 사항은 최명근·나성길 (2006) 참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를 구성하는 소득, 즉,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공제법은 전단계 거래공제방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이 있다. 거래공제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인 반면, 세액공제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액공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²⁾. 부가가치세가 10% 단일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해 감면을 해주거나, 국민 후생 증진 등을 위해 교육 및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에 감면을 해주는 등이 그 예이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가공 식료품, 연탄,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여객운송용역 등이 이에 속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함께 영세율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소비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되는 재화 및 용역 등에 적용되고 있다. 면세와 영세율은 모두 매출액에 대해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면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³⁾. 이로 인해 면세가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면 다음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는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 부가가치세 세수입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세수입 3대 세목으로 2008년 부가가치세 세수입 규모는 약 43.8조원으로 국세의 약 26.2%, 그리고 GDP

2) 부가가치세법 재정 당시 기본세율은 13%였지만, 3%p 범위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실시하여 시행 초기부터 탄력세율 하한인 10%의 시행세율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탄력세율제도는 198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3)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대비 약 4.3%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다.

〈표 1〉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2000	2003	2005	2008
부가가치세	232,120	334,470	361,186	438,198
부가가치세/GDP	3.9	4.0	4.0	4.3
부가가치세/국세	25.0	29.2	28.3	26.2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들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들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연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주들이다⁴⁾⁵⁾.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사업주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나, 세부담 경감 목적으로 변질 운영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남으려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 하여금 매출 규모를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탈세로 연결되는 부작용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 간이과세자가 약 37.5%, 일반 과세자가 절반을 약간 넘는 52.5%이다. 2005년 이전에는 일반 과세자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표 2〉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단위: 명, %)

	법인	일반	간이	계
2000	278,657 (8.2)	1,442,987 (42.6)	1,669,128 (49.2)	3,390,772 (100.0)
2003	359,154 (9.0)	1,861,707 (46.9)	1,773,804 (44.4)	3,942,247 (100.0)
2005	400,398 (9.7)	2,117,551 (51.4)	1,603,663 (38.9)	4,121,612 (100.0)
2008	489,997 (10.0)	2,573,515 (52.5)	1,838,260 (37.5)	4,901,772 (100.0)

주: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4) 광업·제조업·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형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등은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 5)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유일호(1995)에서는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에 앞서 소득세 탈세규모를 먼저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소득의 과소보고 추정규모를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에 이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추정결과

1. 기존 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한 연구로는 유일호(1995), 유일호(1998), 노기성·김동준(2001), 성명재(2008) 등이 있다.

유일호(1995)에서는 사업소득자가 세부담 회피를 위해 세무당국에 소득을 과소보고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소비함수 추정을 통해 소득과소보고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추정된 소득의 과소보고 규모와 민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누락된 민간소비지출 규모를 추정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였다. 즉, 유일호(1995)에서는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에 앞서 소득세 탈세규모를 먼저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소득의 과소보고 추정규모를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에 이용하였다.

유일호(1995)는 총부가가치세액 대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는 1987년과 1988년 10.5%로 추정하였고, 소비지출의 누락이 과세와 면세부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최대 16.9%까지 부가가치세 탈루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다. 즉 부가가치세 탈루율은 1987년과 1988년 모두 10.5%~16.9%로 추정하였다⁶⁾.

동일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유일호(1998)에서는 1993년과 1994년의 총부가가치세액 대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1993년 9.8%, 1994년 6.7%로 추정하였고 소비지출의 누락의 집중도에 따라 최대 14%까지 부가가치세 탈루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다⁷⁾.

성명재(2008)에서도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하여 사업소득신고율 및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였다. 성명재(2008)과 유일호(1995)의 큰 차이점은 종합소득세 탈세규모 추정방식이 다르다는데 있다. 유일호(1995)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세수탄력성을 1이라고 가정하였지만, 성명재(2008)에서는 납세자들이 최소한 일부의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면 세수탄력성이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유일호(1995)와 유일호(1998)의 연구 결과는 탈세규모의 평균치라기보다는 탈세규모의 최소치를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성명재(2008)에서는 2006년 부가가치세 탈세액은 약 1,3조원이고 탈세비율은 3.3%로 추정하였다.

노기성·김동준(2001)은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하여 이를 국민소득계정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노기성·김동준(2001)은 1980년, 1985년, 1990년, 그리고

6) 또한 유일호(1995)에서는 총소득세액 대비 소득세 탈루규모를 1987년 10~11.3%, 1988년 8.7~9.8%로 추정하였다.

7) 또한 유일호(1998)에서는 총소득세액 대비 소득세 탈루규모를 1993년 16.7%, 1994년 11.4%로 추정하였다.

1995년의 추계된 부가가치세 규모와 실제 부가가치세 규모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탈루비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은 1980년 14.9%, 1985년 19.2%, 1990년 13.9% 그리고 1995년 14.3%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노기성·김동준(2001)은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하여 이를 국민소득계정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였다.

〈표 3〉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비율

항 목	1980	1985	1990	1995
A. 산출세액	1조7,278억원	3조5,895억원	8조903억원	17조800억원
B. 실제부가가치세 세수규모	1조4,711억원	2조9,012억원	6조9,644억원	14조6,369억원
탈루(A-B)	2,566억원	6,883억원	1조1,259억원	2조4,431억원
탈루비율 ((A-B)/A)	0.149	0.192	0.139	0.143

자료: 노기성·김동준(2001)

2. 기본모형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노기성·김동준(2001) 연구에서 사용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할 경우 노기성·김동준(2001) 연구 이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기성·김동준(2001)의 모형은 이론적인 부가가치세의 산출세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한 경제 내에서의 총공급은 총생산(Y)과 수입(M)으로 구성되고 중간투입(A), 최종소비(C), 투자(I), 수출(X)로 구성된 총수입과 일치한다. 이는 식 (1)으로 표시된다.

$$Y + M = A + C + I + X \quad (1)$$

매출과세표준은 수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부과되므로 (Y+M)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수출(X)은 영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노기성·김동준(2001) 연구에서 사용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begin{aligned}
 Y+M &= A_T + A_D + C_{NT} + C_T + I_T + I_{NT} + I_D \\
 &= A_T + A_D + C_{NT} + C_T + I_T + I_{NT} + I_{D\cdot T} + I_{D\cdot NT}
 \end{aligned}
 \tag{2}$$

여기서 $A = A_T + A_D$

$C = C_{NT} + C_T$

$I = I_T + I_{NT} + I_D$

$I_D = I_{D\cdot T} + I_{D\cdot NT}$

A_T : 매입공제가 불가능한 중간투입액

A_D : 매입공제가 가능한 중간투입액

C_{NT} : 면세소비, C_T : 과세소비

I_T : 과세투자(대형주택), I_{NT} : 면세투자(소형주택)

I_D : 공제대상설비투자, $I_{D\cdot NT}$: 공제가능설비투자

$I_{D\cdot T}$: 공제불가능설비투자

먼저 소비지출(C)은 면세소비지출(C_{NT})과 과세소비지출(C_T)로 나눌 수 있다. 투자지출(I)은 주택건설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투자와 설비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다시 주거용 건물투자는 소형과 대형주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대형주택 건설투자는 과세되므로 I_T 로, 소형주택 건설투자는 면세인 I_{NT} , 그리고 설비투자는 공제대상 투자 I_D 로 분류된다. 그런데 매입공제대상 투자 지출, 즉 설비투자 중에서 면세조세지출과 소형주택 건설투자인 면세투자지출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부분은 과세된다. 따라서 공제대상설비투자(I_D)는 과세되는 부분(I_{DT})과 그렇지 않은 부분($I_{D\cdot NT}$)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중간투입(A)도 역시 면세대상소비재와 면세투자재 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물은 과세되는 부분(A_T)과 공제되는 부분(A_D)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표시할 수 있다.

$$Y+M - A_D - C_{NT} - I_{NT} - I_{D\cdot NT} = A_T + C_T + I_T + I_{D\cdot T}
 \tag{3}$$

그리고 식 (3)의 과세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C_T = C - C_{NT} = (1 - \alpha)C$$

$$\alpha = \frac{C_{NT}}{C} : \text{면세소비비율}$$

$$I_T = (1 - \beta) \cdot I_H$$

β : 소형주택건설비용

$$I_{D,T} = (\gamma_1 + \gamma_2) I_D$$

γ_1 : 전체 I_D 에서 면세소비재 생산을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γ_2 : 전체 I_D 에서 소형주택건설을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A_T = \delta_1 C_{NT} - \delta_2 C_{NT} + \delta_3 I_{NT} - \delta_4 I_{NT}$$

δ_1 : 면세대상 소비지출의 중간투입률

δ_2 : 면세 소비재 생산을 위해 면세대상 품목이 중간투입으로 투입된 비율

δ_3 : 면세투자의 중간투입률

δ_4 :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면세중간투입률

여기서 A_T 는 중간투입 중 과세되는 부분이다. 면세소비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delta_1 C_{NT}$)에는 면세대상 품목 생산업체로부터 투입된 부분($\delta_2 C_{NT}$)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하며, 면세투자의 중간투입($\delta_3 I_{NT}$)에도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면세중간투입($\delta_4 I_{NT}$)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제외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과 실제 세수와 비교하여 탈루비율을 계산한다.

3. 추정 결과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통계, 국토해양부 건설교통통계연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과 실제 세수와 비교하여 탈루비율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세는 재화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별 자료로 구성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며, 추정치는 대략적인 규모로 이해해야 한다.

등을 사용하였다.

2000년과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면세소비비율(α), 중간투입률(δ_1, δ_3),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간투입비율(δ_2, δ_4), 그리고 설비투자비율(γ_1, γ_2) 등의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건설비율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설비투자 관련 통계치는 건설교통통계연보와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통계를 이용하였다. 파라미터의 비율들을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통계치에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였다.

노기성·김동준(2001)의 추정방법과 동일하게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의 관행에 따라 GDP를 전년도 4/4분기에서 당해연도 3/4분기까지의 합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1년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 반기의 중간인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GDP의 전년도 4/4분기와 해당연도 1/4, 2/4, 3/4분기의 통계를 합산하여 과세 및 면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나. 소비지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면세소비지출을 제외한 부분이 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규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세부적인 산업분류인 기본부문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였다⁸⁾. 그러나 가장 세부적인 분류를 이용하더라도 재화별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별로 과세와 면세를 결정하지만, 산업연관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위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부 동일 산업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가 혼재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담배(0084)의 경우 저가 및 특수용 담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담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류도 농어업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산업연관표에서는 이를 구분할 수 없다. 이처럼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경우에는 그 산업에서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의 비중을 감안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세는 재화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별 자료로 구성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며, 추정치는 대략적인 규모로 이해해야 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5년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이 각각 약

8)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중 기본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은 404개이고 2005년에는 403개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산업도 변화하기 때문에 세분류상에서 삭제되거나 혹은 통합, 신설된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466조원과 약 120조원으로 최종소비지출은 약 586조원이다. 이 중 면세소비지출은 약 325조원으로 면세소비지출비율은 55.6%가 된다. 이 비율을 이용하여 2005년 과세대상 소비지출을 계산하면 약 255조원이다.

면세소비지출비율은 2000년에는 54.7%, 2005년에는 55.6%로 큰 변화가 없다. 노기성·김동준(2001)에서 면세소비지출비율은 1980년과 1985년에는 59%와 60%였지만, 1990년에는 57%, 1995년에는 56%로 현재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주거용 건물투자는 소형과 대형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형주택 건설투자는 과세되지만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소형주택 건설투자는 면세된다.

〈표 4〉 소비지출

(단위: 십억원)

	2000	2005
과세대상 소비지출(C_T)= $(1-a)C$	178,023.7	255,211.9
최종소비지출(C)	392,811.9	574,283.9
면세소비지출(C_{NT})	214,788.2	319,072.0
면세소비지출비율(a)	0.55	0.56
과세소비지출비율($1-a$)	0.45	0.44

다. 투자지출

투자지출(I)은 주택건설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투자지출과 설비투자지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주거용 건물투자를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투자는 소형과 대형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형주택 건설투자는 과세되지만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소형주택 건설투자는 면세된다.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건설비율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호수에 호당 평균면적을 곱하여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면적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다. 소형주택건설비율은 2000년 64%, 2005년 57%이다. 노기성·김동준(2001)에서 소형주택건설비율은 1980년과 1985년에는 49%와 43%였지만, 1990년에는 33%로 크게 감소하고 다시 1995년에는 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세소비재 생산과
면세대상 소형주택 건설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용은
면세소비지출과 면세투자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표 5〉 투자지출(주거용 건물투자)

(단위: 십억원)

	2000	2005
과세대상투자지출(I_T) = $(1-\beta)I_H$	8,640.9	19,255.5
주거용건물투자(I_H)	24,245.8	44,820.0
면세대상투자(I_{NT})	15,605.0	25,564.5
소형주택비율(β)	0.64	0.57
대형주택비율($1-\beta$)	0.36	0.43

투자지출(I) 중 설비투자는 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면세대상 소비 및 면세대상 소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는 과세된다. 즉, 과세대상 설비투자지출은 면세대상 소비 및 면세대상 소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된 설비투자를 의미한다. 면세소비재 생산과 면세대상 소형주택 건설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용은 면세소비지출과 면세투자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노기성·김동준(2001)에서 면세소비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용은 1980년과 1985년에는 43%와 41%였지만, 1990년과 1995년에는 36%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36%와 37%로 추정되었다. 또한 면세투자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용은 1980년, 1985년, 1990년에는 각각 3%, 2%, 3%였지만, 1995년에는 5%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05년에 3%로 추정되었다.

〈표 6〉 투자지출(설비투자)

(단위: 십억원)

	2000	2005
과세설비투자(I_{0-1}) = $(\gamma_1 + \gamma_2)I_D$	53,802.6	71,288.3
공제대상투자(I_D)	138,683.7	176,454.8
면세소비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용(γ_1)	0.36	0.37
면세투자생산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용(γ_2)	0.03	0.03

라. 중간투입

부가가치세제에서 중간투입은 최종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제도가 존

재할 때 면세품 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은 면세제도의 특징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게 된다. 즉, 면세대상 소비재와 면세대상 소형 주택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중간투입은 과세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투입 중 면세품 생산에 투입된 면세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2000년에 탈루비율이 약간 상승하였다가 2005년에는 탈루비율이 약 9.4%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중간투입(과세)

(단위: 십억원)

	2000	2005
중간투입 중 과세부분 $(A_T) = (\delta_1 - \delta_2)C_{NT} + (\delta_3 - \delta_4)INT$	66,317.2	92,878.3
면세소비의 중간투입률 (δ_1)	0.40	0.40
면세소비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투입비율 (δ_2)	0.14	0.15
면세투자의 중간투입률 (δ_3)	0.59	0.52
면세투자생산을 위해 투입된 면세중간투입비율 (δ_4)	0.03	0.02

마.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

앞선 추정치를 토대로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 43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약 39.9조원이 된다. 그러나 2005년 실제로 징수된 부가가치세 규모는 약 36조원으로 약 3.8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가 곧 부가가치세 탈루규모이며, 탈루비율은 약 9.4%이다. 2000년 탈루비율은 약 16.8%이다. 노기성·김동준(2001)에서 탈루비율은 1980년 약 14.9%, 1985년 약 19.2%,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에는 각각 약 13.9%와 약 14.3%였다. 따라서 2000년에 탈루비율이 약간 상승하였다가 2005년에는 탈루비율이 약 9.4%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추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십억원)

	2000	2005
과세소비지출 (C_T)	178,024	255,212
과세대상투자지출 (I_T)	8,641	19,255
과세설비투자 $(I_D - T)$	53,803	71,288
과세중간투입 (A_T)	66,317	92,878
합계(과세표준)	306,784	438,634

그 동안 정부에서는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과세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을 비롯하여 현금영수증 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표 9〉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탈루비율

(단위: 십억원)

	2000	2005
추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A)	306,784	438,634
추정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B) = ((A/1.1)×0.1)	27,890	39,876
실제부가가치세 세수규모(C)	23,212	36,119
탈루규모 (B-C)	4,678	3,757
탈루비율 (B-C)/B	0.168	0.094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자료와 기존의 노기성·김동준(2001) 연구에서 사용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탈세 및 탈루규모를 추정하였다.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노기성·김동준(2001) 연구 이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정결과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 438.6조원이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은 약 39.9조원으로 2005년에 실제 징수된 부가가치세 수입 약 36조원과 약 3.8조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차이가 부가가치세 탈루규모이며, 탈루비율은 약 9.4%이다. 2000년 탈루비율은 약 16.8%이다. 기존의 노기성·김동준(2001)에서 탈루비율은 1980년 약 15%, 1985년 약 19%,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에는 약 14%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이 2000년에 약간 상승하였다가 2005년에는 약 9.4%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탈루규모는 국민소득통계에 포착되는 경제에 한정된 규모로서,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탈루규모는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과세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을 비롯하여 현금영수증 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2005년의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도 아마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일호(1995)에서는 1987년과 1988년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10.5%~16.9%로 추정하였고, 유일호(1998)에서는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1993년 9.8%~14%, 1994년 6.7%~14%까지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성명재(2008)에서는 2005년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약 4%, 2006년에는 3.3%로 추정하였다⁹⁾. 물론 유일호(1995, 1998), 성명재(2008) 그리고 본 연구의 추정 방법과 가정들이 각기 상이하여 상이한 결과가 추정되었지만, 부가가치세 탈루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노기성·김동준(2001)의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노기성·김동준(2001) 연구 이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계도 존재한다. 노기성·김동준(2001)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행에 맞추어 GDP를 전년도 4/4분기에서 당해 연도 3/4분기까지의 합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1년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부과되고 각 반기의 중간인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발생주의에 근거한 GDP와 현금주의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징수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만, 산업연관표와 연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 산업연관표는 GDP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징수액에는 사업부진에 의한 체납, 기업퇴출 또는 폐업으로 인한 결손액, 그리고 추가적인 가산세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이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당해 연도 GDP와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아닌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활용하는 것도 추후 연구과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호(1995, 1998), 성명재(2008) 그리고 본 연구의 추정 방법과 가정들이 각기 상이하여 상이한 결과가 추정되었지만, 부가가치세 탈루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노기성·김동준,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비봉출판사, 2001.
-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한국재정학회, 2008.
- 유일호, 「우리나라의 세수규모 추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재정논집』, 제9집, 한국재정학회, 1995.
- 유일호, 「우리나라의 세수규모 추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6년.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2009.

9) 성명재(2008)에서는 2005년 부가가치세 탈세규모가 1조 5599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성명재(2008)에서는 2000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과 인력관리 방안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yjraa@kipf.re.kr)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나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I. 서론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두 정부 모두 초기에는 민영화, 통폐합과 같은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조조정 정책에서 집권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정책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3월 현 정부의 제6차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에서도 공공기관의 인력통합, 정원관리의 경영효율화를 정책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정책방향은 대부분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나 세부적인 대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에서 인사관리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계획, 직무 분석과 평가, 채용과 승진, 교육과 훈련, 경력개발, 임금관리와 동기부여 등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인사관리도 최근에는 조직의 발전이나 인적자본의 육성 차원의 전략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려고 한다(Selden, 2008). 최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시간과 고용형태의 유연화가 추세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한다면 조직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조직관리 목적의 하위 수단일 뿐이고 조직의 특성과 부합할 때만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적 조직관리 이론에서 논의하는 주요한 인사문제는 항상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현대의 인사관리론은 노사

간, 즉 관리자나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기업의 인사관리도 보수나 진보냐의 정책적 성향이나 기업가나 근로자의 이윤추구 동기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업적 속성인 수익성을 추구하려면 민간기업처럼 인사관리를 해야 하며, 공공적 속성인 안정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하려면 정부기관처럼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2007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여야, 경제계와 노동계의 논란 속에 제정되었다. 중앙정부 부처는 부처별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원, 인사, 근무평정, 징계, 휴직, 복직, 직무교육, 복무, 보수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절한 정원, 인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는 정규직 정원만 10%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아서인지 일부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정원 감축에 따른 인력 증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물론 정부부처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방향과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기간이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수도 전체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3.8% 정도여서 아직은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관리는 정부기관과 같이 채용과 퇴직 등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인사관리는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개별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284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기계약직 인원의 변화 추이를 추정해 보고, 무기계약직의 업무형태, 보수수준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비교분석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개별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이나 복리수준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다소 높아졌거나 유사한
수준이지만 계약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정년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같다고
하지만 임금과 복리수준 등
근로조건이 비정규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중규직(中規職)”이라는
별칭도 있다.

II. 무기계약직 정의와 문제점

1. 무기계약직의 정의와 정부의 대책

무기계약직의 개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일종의 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임금이나 복리수준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보다는 다소 높아졌거나 유사한 수준이지만 계약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같다고 하지만 임금과 복리수준 등 근로조건이 비정규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중규직(中規職)”이라는 별칭도 있다(한겨레신문 2008. 6. 30).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범위,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 국내외적으로 통일되고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노동부, 2007; OECD, 2010).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국제적 협약 및 국가의 입법은 있으나 무기계약이라는 별도의 근로 및 고용형태에 대한 입법례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좀 더 좁게 보려고 하고, 노동계는 광의로 해석해서 넓게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08년 8월 현재 정규직은 16,104천명, 비정규직은 5,445천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¹⁾.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고용형태가 유연화 되면서 비정규직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다가 2006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①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②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및 처우개선, ③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지도, 감독 강화, ④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다(노동부, 2007). 2006년 10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수립과 동년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일괄전환 계획에 의하여 2007년 6월 및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

1)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추정하는 것보다 많은 845만 명이라고 보고 있다.

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의 단계적 전환, 인력, 예산 관리체계 확립,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례화, 퇴직금,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의 별도 편성, 임금수준의 인상, 외주화 업무의 직접수행으로의 전환 등이 추진되면서 실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일정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노동부, 2007; 국가인권위원회, 2008).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고용불안,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복지제도와 승진의 제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화 사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 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점

2006년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에 여야, 경제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언론이나 노동계는 법제정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우려하였다. 비정규직의 해고자 수에 대한 판단은 다르겠지만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대량해고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고용불안,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복지제도와 승진의 제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화 사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물론 법제정으로 노동계 및 민주노동당은 예상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기부진 속에서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의 추가 부담과 해고과정에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동아일보, 2008. 6. 16일자).

공공기관의 경우 법제정과 오랜 기관 준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민간부문과 같이 노사갈등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중앙, 지방, 학교 등 행정기관〉

- 법적 지위 문제로, ① 공무원과 구별되는 민간인 무기계약직군 형성, ② 사실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
- 고용불안으로 ① 상시 지속적 업무의 자의적 해석, ② 비정규직 인력수급체계의 상시화
-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성격의 문제로, ① 채용권자와 실질적 사용자의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인력관리의 탄력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 분리, ② 사용자 범위의 축소
 - 근무성적평정과 불리한 처우, 광범위한 징계 및 해고사유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
- ① 예산편성에서 총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어서 정원 내외로 흡수하기가 어려워 비정규직 업무와 무기계약직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함(상시업무 사용구분 모호), ② 정원으로 관리하는 기관과 정원 외로 관리하는 기관이 혼재(상시적 고용불안으로 정원관리 문제), ③ 별도의 하위 직군으로 인식하여 신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 기회의 축소와 정규직의 고용의 질 저하, ④ 기간제 근로자의 징계, 해고사유를 확장하여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해고, 징계기준 적용의 문제 발생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연한 규정, 무기계약직에 대한 기존 정규직과 구별되는 차별적 근로조건 등이 문제가 있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8),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인용.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인력관리의 탄력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나타난 문제점 또한 민간기업과 같은 차원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만 나타날 특이사항도 존재한다. 주로 은행 등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으로 야기된 문제점은 비정규직의 전환시점인 2년 경과 후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불안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후 분리직군으로 별도의 직군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신인사제도에서와 같이 고용차별의 문제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부의 각종 예산 통제, 평가 및 경영효율화 정책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상시업무 구분의 모호, 정원관리의 문제, 차별적인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는 불완전한 고용형태로 계속 존재하거나 적정 직무를 기반으로 하여 전환되거나 채용된 것이 아니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성과관리, 승진 등 동기유인 결여로 나타나는 생산성이 저하되

는 인사관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반 정규직과 차별받는다라는 불공정성의 인식을 갖게 되거나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직무수행의 동기유인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Ⅲ.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실태²⁾

1. 무기계약직 인원

2010년 5월 말 현재 284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총인원은 9,207명으로 정규직 240,084명 대비 3.8%이며 비정규직 35,281명 대비 26.1%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무기계약직의 인원은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순으로 기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인원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인원의 60.3%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한 비정규직 일괄 전환 시에 아예 정원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보다는 준시장 공기업이, 준정부기관보다는 기타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원 35,281명 중에서도 2010년 5월 말 현재 근로계약이 2년 지나서 계속 근로중인 비정규직 인원인 9,124명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 2항에 따라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 1항 단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을 초과하였다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6가지 제한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명시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채용된 인원과 비정규직 중 2년 이상 근속기간이 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총인원은 18,459명 정도 이하로 추정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채용된 근로자의 수를 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중을 보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3.84%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수를 더하여 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준시장형 공공기관은 11.08%, 기타공공기관은 9.43%이고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7.64%이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력현황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수가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만 할 수는 없다.

명시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채용된 인원과
비정규직 중 2년 이상
근속기간이 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총인원은
18,459명 정도 이하로
추정할 수 있다.

2)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10,198개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2010년 7월 기획재정부가 284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2010년 5월 말 기준으로 ① 전환인원, ②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인원추이, ③ 근속년수, ④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보수수준(월평균)을 조사하였고, 본 연구를 위하여 2010년 8월 28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① 일괄전환 이후 전환인원, ② 향후 전환계획, ③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유사직종, ④ 무기계약직 복리후생 수준과 제도, ⑤ 무기계약직 전환 등과 관련 내외부 문제화, ⑥ 외주화 가능 인원 및 직무를 추가 조사하였다.

284개 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이 100명이상인 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이들 15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총 6,803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총인원 대비 7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무기계약직 추정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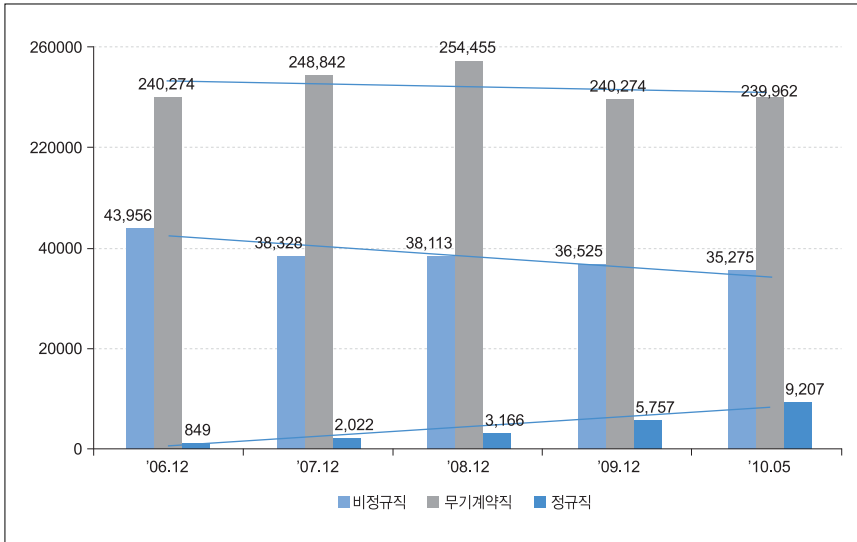
(단위: 명)

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총계
	시장형	준시장형	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계		
무기계약직 (정규직 대비 비율)	46 (0.17%)	898 (1.86%)	944 (1.25%)	1,116 (6.07%)	1,593 (3.28)	2,709 (4.05%)	5,554 (5.70%)	9,207 (3.84%)
2년 이상 기간제	43	4,440	4,483	144	858	1,002	3,639	9,124
합계 (정규직 대비 비율)	89 (0.32%)	5,338 (11.08%)	5,427 (7.18%)	1,260 (6.86%)	2,451 (5.05%)	3,711 (5.55%)	9,193 (9.43%)	18,331 (7.64%)

주 1. 2010년 5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240,084명, 기타비정규직 35,281명.
 2.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무기계약직 비율만 의미함. 무기계약직/정규직×100.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운영의 특징을 보면 284개 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이들 15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총 6,803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총인원 대비 73.9%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별 무기계약직 인원이 50명 이상 99명까지 있는 공공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총인원이 1,241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총인원 대비 13.5%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284개 공공기관 중 32개 공공기관이 전체 무기계약직 총수 9,207명 중 87.4%에 해당하는 8,044명을 운영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수가 특정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개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이 있다고 조사된 공공기관은 전체 284개 기관 중 8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감안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나 개별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의 정원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공공기관 연도별 고용형태 변화



무기계약직의 경우 특정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보다는 단순한 노무나 사무행정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무기계약직 업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종을 크게 기술직, 단순직, 사무행정직, 전문직으로 단순하게 유형화해 볼 수 있는데,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된 자료를 기술직, 단순직, 사무행정직, 전문직 4가지 유형의 직종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특정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보다는 단순한 노무나 사무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직무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직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무기계약직 직종별 인원

(단위: 명)

유형		기술직	단순직	사무행정직	전문직	합계
공기업	시장형	0	23	22	1	46
	준시장형	144	545	209	0	898
소계		144	568	231	1	94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4	95	984	3	1,116
	위탁집행형	396	112	878	201	1,587
소계		430	207	1,862	204	2,703
기타공공기관		1,165	2,249	2,009	137	5,560
합계		1,739	3,024	4,102	342	9,207

주: 1. 단순직 : 주차, 청소, 환경관리 등 노무 직무
 2. 사무·행정직 : 서무, 원무, 비서 등 행정, 운영, 관리지원 직무
 3. 기술·기능직 : 기사, 기계, 보건, 영양사, 조리사, 전산, 사서 등 직무
 4. 전문직 : 연구, 간호사, 전략기획 등 전문직

현재 무기계약직 업무 중 정규직의 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무기계약직 중 3,154명(34.3%)이 정규직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업무 중 비정규직의 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무기계약직 인원 중 7,159명(77.8%)이 비정규직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직무와 더 유사하다고 조사되었다.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직무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직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의한 비정규직의 일괄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비정규직의 직무와 업무를 그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과 정부의 비정규직 일괄 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무기계약직이 수행해야 할 상시업무를 기준으로 하거나 필요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무를 보면 기존의 비정규직 업무와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약간의 보수수준 및 복리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직무가치의 차이에 의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차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보수수준과 복리후생 등 처우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까지 개선되거나 성과관리가 적절하

게 되지 않는다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노사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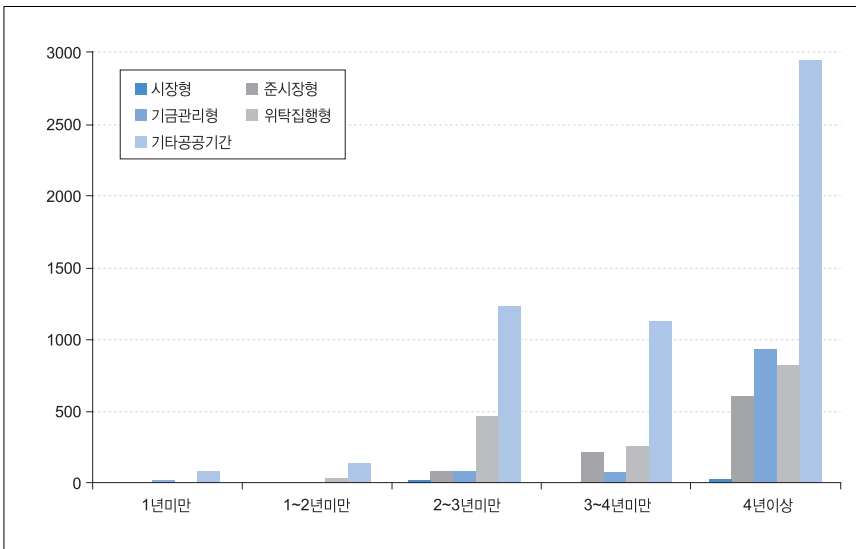
정규직, 비정규직의 업무와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상호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직무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직군이 차별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무 재설계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수, 복리후생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 이후 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근속기간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3. 무기계약직의 근속연수와 근로조건

2007년 6월 최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 이후 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근속기간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이 일괄 전환 이후에 지속적으로 충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3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보수 증가 및 승급 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2]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속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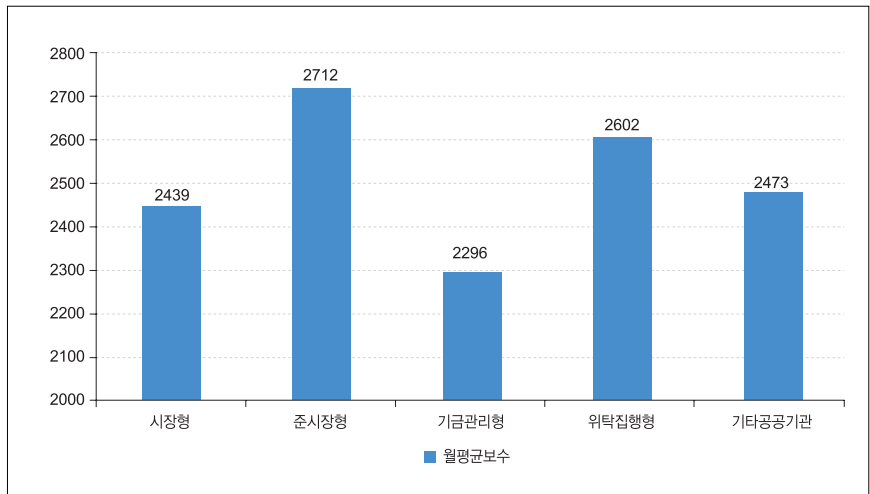
무기계약직의 월평균보수(기관 평균)는 2,503천원으로 연평균보수 총액은 30,036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기관 평균 보수수준은 정규직, 무기

향후 무기계약직의 생산성 제고,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적절한 보수수준의 유지나 보수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계약직, 비정규직 순으로 나타났다³⁾. 무기계약직의 월평균보수는 준시장형과 위탁집행형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보수와 비교하여 무기계약직 월평균보수가 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교하여서는 무기계약직 월평균 보수는 55.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무기계약직의 생산성 제고,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적절한 보수수준의 유지나 보수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의 공공기관별 월평균보수가 300만원 이상인 32개 기관의 직종을 분석해 보면 기타공공기관 17개 기관, 위탁집행형 10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직종을 보면 주로 사무행정직과 단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분류로는 금융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단순, 사무행정 및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직무가치보다는 근속연수에 의하여 보수수준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감사원, 국정감사 및 언론의 지적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수준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연공, 직무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2007년 일괄 전환 이후 최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공의 요소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림 3] 무기계약직 월평균 보수수준

(단위: 천원)



3)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월 평균보수의 단순한 기관간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것임. 일반적으로 동일 직군과 직급에서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근속, 직무가치, 역량 등의 요인이 작용하나 다른 직군간 보수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직무가치라고 볼 수 있음. 경영공시 및 성명제 외(2009) 연구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정원 내 일반직원의 평균근속연수(기관 평균)는 10.6년, 인원기준으로는 14.3년으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5월 현재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직군간 근속연수를 고려한 보수수준을 비교하지는 않았음.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 수준은 평균적으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과 비교하여서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급 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급여성 복리후생수준은 보수수준과 연동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절대적인 복리후생수준은 임금수준과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과 같이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보수수준을 대체로 200만~300만원대(47%), 100만~200만원대(28%)에 몰려 있지만 300만원 이상도 있으므로 기관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보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비정규직 대비 보수 및 복리후생수준의 변화 정도를 보면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2007).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보수수준의 차이를 보더라도 보수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는 복리후생 제도나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는 복리후생 제도나 규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비정규직 대비 보수 및 복리후생 수준의 변화 정도를 보면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무기계약직 월평균보수 분포

(단위: 기관수)

유 형		합 계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공기업	시장형	4(100%)	2(50%)	1(25%)	1(25%)	0
	준시장형	7(100%)	0	5(71%)	1(14%)	1(14%)
계		11(100%)	2(18%)	6(55%)	2(18%)	1(9%)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9(100%)	5(56%)	2(22%)	1(11%)	1(11%)
	위탁 집행형	31(100%)	8(26%)	13(42%)	8(26%)	2(6%)
계		40(100%)	13(33%)	15(38%)	9(23%)	3(8%)
기타공공기관		80(100%)	22(28%)	41(51%)	15(19%)	2(3%)
전 체		131(100%)	37(28%)	62(47%)	26(20%)	6(5%)

4. 인사관리 제도화

공공기관별로 최근 무기계약직의 수가 증가하면서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는 인사, 보수, 복리후생 제도 마련이나 별도 적용 규정을 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별도의 직군 및 분리직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한다면 조속하게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는 인사, 보수, 복리후생 제도마련이나 별도 적용 규정을 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인사 규정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만큼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별도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공공기관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 수가 적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거나 비정규직의 연장선상에서 관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이 짧아서 승급이나 승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인사관리 차원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 승진 방안 등 무기계약직의 동기유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 무기계약직의 근속연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동기부여 요인이 줄어들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몰입도도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5. 무기계약직의 외주화

비정규직 보호법의 예외 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직무 등을 참조하여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에 고유 및 핵심 업무가 아닌 단순직종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형태의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외주화가 가능하려면 적용이 가능한 직종의 현재 임금 및 복리후생수준이 시장임금과 비교하여 최소한 같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야 외주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직종이나 업무 중에서 외주화가 가능한 직무로 경비, 비서 등 단순 보조업무와 전산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외주화가 가능한 인원 조사에서 85명 정도가 외주화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결과가 객관적인 외주화 가능 직무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 내부 실무자들이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외주화가 가능한 인원 수 조사에서는 732명 정도 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숫자는 전체 비정규직 인원 수인 35,281명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수이고, 가능한 직무도 무기계약직 직무에 비하여 좀 더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파견대상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능한 업무를 법으로 규정(positive list)하고 있으므로 이 업무 범위에서 검토해야만 한다.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직종 및 업무 중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직무를 기준으로 전체 무기계약직 직종과 업무를 재분류해 보면 아주 단순화하여

1,776개 정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의 외주화의 접근은 단순 사무, 노무 중심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으나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민간기업에서와 같이 주변적, 비핵심 부문의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만약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외주화나 아웃소싱을 검토한다면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및 자회사에 대한 외주화에 대한 탈법성을 지적한 판결의 영향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기조인 공정한 사회 논의에 근거하여 보수수준이 높고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높은 일부 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문직종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기계약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평균 46.7%로 정규직 가입률 68.8%보다는 낮고 비정규직 가입률 2.6%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비정규직, 파견, 사내도급 유형

구 분	계약직	파견직	사내도급
계 약 형 태	회사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함	파견업체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함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일의 결과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해 도급업체와 도급계약
고 용 주 체	원청회사	파견업체	도급업체
근 거 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법상 도급계약
사 용 직 무	제한없음	26개직종	일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직무
계 약 기 간	2년	2년	제한없음
노 무 지 휘 권	원청회사	원청회사	도급업체
고용보호법을 규정	2년 계약 종료후 고용의무 발생	2년 계약종료후 고용의무 발생	형식상 도급·위임이라도 도급·위임업체의 노무지휘권, 사업독립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봄

주: 한국경영자총연합회(2009), 『인사·임금면담』, p. 246 참조

5. 노사관계

무기계약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평균 46.7%로 정규직 가입률 68.8%보다는 낮고 비정규직 가입률 2.6%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무기계약직 관련하여 법원 등 외부 사법기관에 제기된 사안을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및

기계약직의 직무와 업무는 비정규직과는 상당히 유사하며 정규직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과 차별된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특정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파견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것이고 공공기관 내부에 제기된 사안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의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노동계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원관리 안에 포함시켜야 하며, 표준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무기계약직의 문제도 정규직과 비교하여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관한 노사문제로 발전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IV. 정책적 대안

1. 실태분석의 요약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수 및 업무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무기계약직 인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증가 속도는 연도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의 비정규 보호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일괄 전환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도 많았으나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원통제 등으로 정원 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가 35천여 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전체 무기계약직의 인력은 증가할 소지가 있다.

2007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후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생산성 향상 및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기계약직의 직무와 업무는 비정규직과는 상당히 유사하며 정규직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과 차별된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특정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50인 이상의 무기계약직을 운영하거나 이후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복리후생 수준은 정규직보다는 낮고 비정규직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공기관 유형별로 비교하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 및 위탁형 공공기관 일부에서 보수 및 복리후생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대비 적절한 정원, 인력, 성과관리, 교육훈련 및 복리후

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대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된 지 3년 정도가 지나고 있으므로 몇 가지 주요한 무기계약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관리 범위와 내용은 지난 비정규직의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비정규직과 연계하여 무기계약직의 전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차별화된 고유·필수 직무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 및 직무 분석을 거쳐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별도 직군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정원 내에 포함하여 정원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 업무가 단순, 보조 및 전문직 업무로 대별되는데, 동일 기관의 정규직 및 다른 유사 공공기관 대비 적정 수준의 보수 및 보상체계를 수립하여 무기계약직 직원의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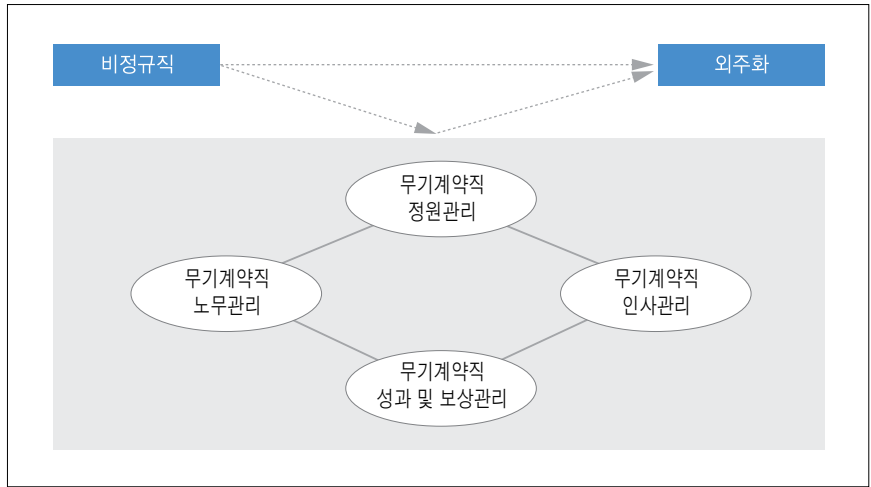
둘째, 정부는 경영효율화 차원의 통합 관리방식을 수립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또는 모델을 제정하여 매년 준정원 관리나 인건비 통제 등 기본적인 준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인사, 노무관리방안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 방식으로 권고토록 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무 중에서 IT 등 일부 전문 직무를 중심으로 시장임금 및 복리후생수준과 비교하여 외주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파견, 용역 등 외주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림 3]과 같이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외주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별도의 인사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기계약직 관리 범위와 내용은 지난 비정규직의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무기계약직의 외주화 및 인사관리 방향



V. 결론

세계 인권선언이나 사회적 규약 같은 국제적 기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나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이나 동일노동 동일보수를 받을 권리를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성장과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동시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일괄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기관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였으나 현재 정부의 정원관리의 사각 지대에 존재하게 되어서 일명 ‘중규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당국은 정년을 보장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정원관리,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조직원으로서 합리적인 처우와 동기부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려는 취지로만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직무분석이나 인력계획을 수반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확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우리나라 고용의 유연성을 증가하는 데 일조하였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불안과

차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당면한 정책적 목적으로 달성하려고 도입한 무기계약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효과적인 인사관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동기부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근 유행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시각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KIPF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효과적인 무기계약직 인사관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동기부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인적자본이라는 시각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0
- 국가인권위원회,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08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보고서』, 2010
- 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7
- 노동부, 『비정규직 활용실태에 따른 기업의 비정규직법 대응전략 분석』, 2008
- 박지순, 『합리적 외주화(시내하청, 용역) 제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8
- 박창용,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제17집, 2007
- 유경준 편,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KDI 연구보고서, 2009
- 조성재 · 우종원 · 심용보 · 권혜원 · 平木眞郎 · 土屋直樹 · 김가람, 『공공부문 정원관리의 한일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조순경, 「여성 비정규의 분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별의 논리」,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2008
- Thompson, J. R, "Toward a More Flexible Public Workforce : Issues and Implications," *Handbook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Government*, Published by Jossey-Bass, 2005
- Kahn, S. "The Bottom Line Impact of Nonstandard Jobs on Companies'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In F. Carre, M. A Ferber, L. Golden, and S.A. Herzemberg(eds), *Nonstandard Work: The Nature and Challenges of Emerging Employment Arrangements*, Champaign, Ill.: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2000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OECD Publishing, 2010

Selden, Sally Coleman, *Human Capital : Tools and Strategies for the Public Sector*, CQ Press, 2008

정책토론포럼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 본 원고는 2010년 11월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신용정보협회와 국민일보사 1층 메트로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 토론회 개요

- 주 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 일 시 2010년 11월 2일(화) 14:00~16:00
- 장 소 국민일보사 1층 메트로홀
- 진행순서
 - 14:00~14:15 개회사 및 인사말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인 사 말 김석원 (사)신용정보협회 회장
 - 14:15~14:30 격려사
 - 14:30~15:45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 발 표 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 ▶ 토 론 자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동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15:45~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00 폐회

(가나다 순)

주제발표 요약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지방세 체납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 4,0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 7천억원) 대비 6.9%에 달하였음¹⁾
 -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추이를 보면, 2004년 3조 2,669억원에서 2008년 3조 4,096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2008년 기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 규모는 국세청 소관 미정리 체납액 3조 9,080억원의 8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도 국세는 1.8%인 데 비해 지방세는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지방세의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2004년 83.9%에서 2008년 91.5%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2008년 94.8%를 기록한 일본의 경우에는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의 체납 지방세의 징수 노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국세의 경우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세 체납의 민간위탁 필요성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고, 향후 재정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2010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44% 정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부동산 거래 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 등록세를 통한 세수확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획기적으로 체납 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나, 체납징수 인력의 부족으로 상당수의 체납사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8월 현재 전체 지방세 공무원 9,152명 중 약 1/4이나 되는 2,173명이 체납징수 업무에 투입되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등 다른 세정 기능을 희생하면서 체납징수 인력을 보강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제주도는 전체 세무 공무원 중 2/3 이상이 체납징수에 배치된 상황임
 - 체납징수 인력 1명당 연간 처리해야 하는 체납사건²⁾은 약 2만 3천건으로 체납사건 1건당 물

1) 『지방세정연감』에는 '미수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년도 발생 체납액 당해연도에 징수된 것은 미수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징수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미수액은 미정리 체납의 누적총액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미수액'을 '미정리 체납액'이라고 부름

2) 체납징수 인력 자료는 2010년 8월 기준이나 체납 건수는 2008년말 기준임

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³⁾은 평균 6분 미만임

- 특히, 경상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경우 체납사건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2분에도 미치지 못함

- 체납된 세금을 방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필요한 재정을 세금으로 조달할 때, 체납된 세금은 탈세된 세금과 마찬가지로 성실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발생시킴
 -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2. 효과적인 민간위탁 도입 방안

- 지방정부의 당면과제인 체납 세금의 징수를 제고를 위하여 차선책 또는 보완책으로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현행 법체계상, 행정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체납 지방세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 민간회사의 체납징수 활동은 거소지 확인·재산조사·체납 통지 등 사실행위에 국한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은 다양한 이

점이 존재하는 반면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법령 정비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자율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임

- 민간 추심회사의 전문성 및 성과보상 체계, 전국적인 네트워크 등을 통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납세자의 비밀유지 및 권익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함
- 민간 추심회사를 활용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격 추심회사 선정, 수수료율 책정, 체납활동의 범위 등에 관한 지방정부와 민간회사 간의 합리적 계약이 중요함
 - 수탁기관 선정시 민원발생도, 평판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납세자의 비밀유지 및 권익보호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의 보완과 민간 추심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및 위탁기관의 합리적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요청됨
 - 특히 민간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정추심법 및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여야 할 것임

3) 세무공무원 1인은 연간 2,00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 것임. 연간 2,300시간 근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음

토론 요약

소액체납징수에 한하여 징수업무 위탁

박종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문은 지방세 분야의 체납징수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실무상 참조할 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제자의 견해와 평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첨언할 것을 중심으로 토론요지에 갈음하고자 한다.

1. 필요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징수확보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명단공개제도, 신용정보 제공 및 법원에 의한 감치명령제도 등 고액·상습체납액의 징수 확보를 위한 강경한 조치들이 많이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동시에 소액체납징수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소액체납이 누적되면 고액화 및 상습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 등 통계수치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체납 중 1,0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은 그 건수와 인원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이 부과업무뿐 아니라 이러한 체납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는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과다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체납징수에 한하여 민간에 그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이란 체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¹⁾.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정부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해 민간위탁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한계

다만,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행정권한 중 민간에 위탁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이 없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징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 수준에서 징수업무 중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지방세 징수업무 중 체납자 압류재산의 매각, 배분 및 소유권 이전 업무에 추가하여 소

1)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액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최고 업무, 결손처분대상에 대한 재산조사 업무, 그리고 고액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지방세의 경우).

물론 위탁기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손처분에 대한 최종결정, 수탁업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제반 활동과 관리·감독, 체납액 징수업무와 관련한 민원업무 수행 등은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 납세자 권익보호 등 강화해야

서희열/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 최근 미국의 경우 46개 주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캘리포니아 주 LA 남쪽 메우드시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해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성남시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여파가 커 보인다. 최근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체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징수를 위한 행정력이 발생하고 세수의 부족이 발생한다.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과세형평성을 해쳐서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게 된다. 또한 공정사회에도 역행하게 된다.

세무당국의 세무징수가 한계에 달했고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위탁관리 기준을 보면 예전 우리나라의 세법 규정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고 소득세나 간이과세에 대한 위탁징수 규정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말부터 41개 주에 민간채권

추심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은행, 보험, 채권은행 등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몇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은 필요하다.

첫째로 납세자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조되어야 한다. 현행 국제징수법의 내용을 보면 신용정보의 인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및 결손 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둘째, 불법적이고 가혹한 채권수수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민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발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모든 자치단체에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게 하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발표자료 16쪽 자료에서 지방세공무원의 체납업무 투입시간이 국경일 등을 계산할 때 조금 다른 것 같고, 광주광역시의 체납담당자 수도 20명은 잘못 된 것 같다. 용인시 기흥구청에 전화해 본 결과 용인시도 10여명은 된다고 하는데 광주는 잘못 된 것 같다.

박종수 교수가 언급한 국제징수법의 증가산재를 보면, 무조건 지방세 체납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체납세금이 기간이 얼마나 경과되어 징수됐는지 액수가 얼마나 체납됐는지를 단계적으로 봐야 한다.

세목 통계 부분도 등록세, 취득세 등은 재산관련세인데 시의적절하게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까지 가는 것이 의아하다.

위탁 가능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장경덕/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지방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체납 지방세의 민간위탁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만약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면 효과적인 실현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무원 인력의 한계 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도 민간위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소수의 체납자로부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리적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징수업무라는 국가 고유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는 정도(범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영역이고, 단순한 사실행위 법률보조 행위의 경우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큰 원칙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가 위탁 가능한 법률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독촉이나 방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민간 추심원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세는 주민이 자치적·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있다면 소수의 체납자에 대해 효율적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수 체납자에 대한 징수위탁에 대해 대다수 주민이 찬성(지지)할 것이다. 때문에 지방세법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난다면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제도의 도입시에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비로소 시행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체납자 개인정보,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흉악범에 대해서도 얼굴 공개 등 인권보호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단순한 체납자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 초기에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불법추심이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상응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적인 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불법적이고 가혹한 사설 추심업체와 신뢰를 쌓은 적격한 신용정보업체를 구별(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경제학에서 레몬마켓으로 대변되는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시장을 살펴보면, 건전한 업체와 부적격한 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레몬(저급한 물건)만이 살아남는다. 마찬가지로 추심업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불법추심업체만이 득세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해답은 신호(signal)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신호는 흥

보, 감독, 교육 등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기금이나 보험가입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위탁, 도입 및 범위 등 신중한 고려 필요

전동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 드린다. 오늘 논의된 주된 내용으로 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있어서 과연 민간위탁만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주제로 설정하여야 할 것 같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간접체납징수방법, 강제집행방법 등 무수한 방법이 있다. 지방세는 국세 대비 소액이고 대중세가 대부분이며 구조적으로 국세에 의존적인 surtax의 성격을 가진다. 발표자는 체납이 경기도와 서울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심각한 상황이지만, 발표자가 언급한 지방세 통계와 국세 통계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통계방식과 국세 통계방식은 약간 다르며 지방세 통계방식으로 환산할 때 체납비율과 2008년도 기준 지방세 불납결손미납액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몇 가지 통계가 의심스럽다.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와 인력구조를 걱정하였는데 고마운 말씀이지만 실제로 국세담당관이 지방세행정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공공부문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징수가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징수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징수상 비효율성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세금 징수는 공적의무인데 민간에서 집행시 인권침

해의 가능성이 있고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까지도 우려된다는 내일, 11월 3일자 신문의 좋은 글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방면의 의견을 모두 귀기울여야 하고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과다한 채권추심문제, 민간위탁 도입 가능성과 범위 문제 등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IRS도 96년도에 민간위탁을 1년간 시행하다 중단하였는데 미국에서 중단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에서도 체납추심회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더라도 독촉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도 2009년 2월에 김진수 박사가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권추심행위 자체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의 실증적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담보될지 의문

최원석 /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의 공식의견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개인의견임을 밝힌다.

1.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바라 봐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과 달리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그런데 민간추심업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담

보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제도 설계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 국세청에서도 국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제도를 3년 정도 시행한 예가 있는데, 미국 국세청이 민간위탁을 포기하면서 내세운 이유 또한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납세자권익 침해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였다. 따라서 행정의 고유한 성격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cost)과 혜택(benefit)을 비교했을 때 혜택이 더 커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국세청의 경우에는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폐지하였다. 우리나라도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동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일차적으로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주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실제로 민간업체 직원의 콜센터 파견수준으로 소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양국 모두 위탁업무 또한 사실행위에 국한하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행위에 국한되는 등 제한된 권한으로 악의적인 체납채권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4. 민간위탁시장 구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민간위탁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고 특정업체에 의해 시장가격이나 공급량이 결정되는 독과점시장이라면, 적정수준으로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고 사회가

필요한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특정 위탁업체에 휘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전에 민간위탁시장의 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추심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그 결과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관리감독비용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6. 일반납세자인 국민들의 수용도나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협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징수 업무는 대표적인 권리침해적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권리침해적인 행정행위를 민간추심업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일반납세자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순응할 것인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국민에게 홍보·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추심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일 것인데, 이러한 업무협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요컨대, 지방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포함해야

현진권/아주대 교수

대학에서 공공부문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앞서 토론하신 분들은 미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시적 관점에서 왜 공공부문 영역이 민간부문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학의 초기 이론은 공공재 이론과 외부성의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20세기 이후 정부개입으로 또 다른 실패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재원은 반드시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 100억원에 대한 세금을 걷어 들인다면 그만큼 경제 활동에 대한 힘을 잃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낭비이다. 세금 액수 이상으로 경제에 굉장히 비싼 활동이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개입의 전제 조건은 정부는 천사라는 논리다. 20세기 이후 나온 이론 중의 하나는 결코 정부는 천사가 아니고 공공부문도 결국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론이 있다.

지금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중 어느 쪽이 크냐에 있다. 메시지는 가능한 한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입을 해야 한다. 개입을 하되 public production이 아닌 public provision을 하라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세계적 이슈였다. 전통적으로 공공재 이론을 통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이 깨지고 있다. 치안도 전통적으로 공공에서 했지만 민간부문에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 부분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배재성 특성하에서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한다는 논리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조세부문은 크게 부과, 조사, 징수를 들 수 있다. 현

재 징수는 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문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체납업무를 공공부문에서 맡게 되면 비효율성 문제가 생긴다. 공공부문은 감시가 힘들고 체납업무는 인기가 없으며 끈질기게 해결하기보다는 빨리 결손체납을 하려고 하게 된다.


의도적인 체납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납도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한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follow-up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은 경쟁이 작동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공부문은 독점이라는 얘기다. 민간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

2008년 말을 기준해서 전체 지방세 체납건수가 5,000만건 이상이고 이는 모든 국민이 한 건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화에 있다. 세금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비용이고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에 무관심해지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는 효율과 개인 권리 혹은 정보간의 상충으로 볼 수 있다. 효율부문은 공공부문을 축소해서 세금을 적게 걷어 민간부분이 발전하고 사회적 편익이 올라가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문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권리 문제는 법적 보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산업에는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힘이 있어 효율이 지금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로 지방세만 할 것이 아니고 국세도 포함해서 같이 해야 하고 절대 해당 공무원만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추심회사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홍보문제로, 추심회사를 영어로 collection company라고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았을 때 collection company는 알고 있는데 추심회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름부터 김개똥이면 국민의 마음이 그 정책으로 가기 힘들다. 



공공정책포럼

■ 제10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관리

제10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관리
- 일 시 2010년 10월 13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블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08:05~08:45 주제 발표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10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블룸에서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관리」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0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이만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관리는 기관의 성과 제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객만족도 조사의 현황과 이와 관련한 평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뜻깊은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요약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관리

최동규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한국생산성본부는 PCSI모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관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화의 기초 아래 국가생산성과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고객만족도 관리 평가의 가장 큰 숙제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고객으로서 국민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현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경영을 명시하고 있다.

1999년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를 최초 시행한 이후, 한국생산성본부는 NCSI모형을 바

탕으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 참여해 왔다. 200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통합시행된 이후, 2009년 조사의 기본설계 사업자와 주간 사업자가 분리되었고 이에 현재 생산성본부는 기본설계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바라보는 일관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본설계에 대한 감독·승인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과정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PCSI모형을 기반으로 한 현 고객만족도 조사는 사업단위별로 통계분석방법에 의한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여 1:1 개별 면접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구조화된 설문서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등급화하여 발표한다. 향후에는 2009년 136개, 2010년 169개였던 조사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공공기관이 수행한 노력과, 정부가 유도한 혁신의 성과에 기인한 것이다. 추이에 따르면 특히 공기업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이 1999년 이후 오랜 기간의 평가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축적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기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 고객만족도 관리에 소홀했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객만족도 평가는 고객만족경영 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이 고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코레일네트웍스·한국수출보험공

사 등이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제고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을 정착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PCSI모형을 바탕으로 한 현 평가결과의 수준이 매우 높아, 국민의 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지난해에는 공기업이 평균 92점,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다. 앞으로도 점수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로 NCSI모형을 활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고득점이 지속되는 경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평가결과와 실질 국민 체감 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올해는 시범적으로 공기업에 PCSI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평가를 혼합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국민평가에서는 공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혜자로서 일반 국민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평가결과와 국민 체감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사회적 수혜자에 대한 적절한 샘플링과 구조화된 설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의 경우, 그 취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스테레오 타입의 응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민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제적·목적적·윤리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CSR) 달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평가가 기존 고객만족도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우선, 기관의 규모 및 인지도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신뢰성 문제, 다소 추상적인 평가결과의 활용성 문제 등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고 고객중심경영을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민 체감 수준과의 괴리 및 평가 결과 활용성 문제, 국민평가 도입에서 나타난 한계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객만족도 평가의 새로운 대안은 공공기관의 사회 기여와 자율성 확보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자유 토론

김동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관의 경영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일반적인 서비스 기능에 대한 조사와 달리, 고객에게 불합격 인증을 할 수 있는 심사·검사 등 규제적 기능 수행시에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동규/발표자

만일 규제적 기능에 대한 평가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편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적 기능 수행에도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에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평가에 포함할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오영균/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 생산성 측면에서 기관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평가의 포커스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보다 홍보성과에 맞춰져 있다. 예산 등의 투입요소 및 그에 따른 수익성을 평가하기보다, 인지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 생산성 관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국민평가 방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발전의 핵심요소인 리더십은 자율·권한 이외에도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러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적 기능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의 어려움은, 평가기법상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검사 등 업무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부정적인 응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바꿈으로써 목적에 맞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동규/발표자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기관별로 특성화된 평가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관 간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현 평가체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부정적 응답의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항목의 경우, 임의성이 확보되느냐 가정하에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재인/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발표에서 제시된 국

민평가와 같이 피선택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PCSI모델보다 NCSI모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고득점이 지속되는 것은 공공기관이 이미 현 PCSI모델에 적응한 결과이며, NCSI모델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최동규/발표자

현재 생산성본부에서는 새로운 DJSI모델을 자체 검토 중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속가능경영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윤호/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이사

우리 공단의 경우 매년 54개 업종에 걸쳐 약 340만 명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합격률이 평균 40%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국민평가하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최구형/한국생산성본부 CS경영 센터장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이 시험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부당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유형일지라도 합격과 불합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검증 영역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보는 등 유형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민간기업의 경우 CS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CS관리가 리스크관리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CS를 통해 마케팅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에도 민간과 같은 CS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현재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의 관대화 등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기관별 맞춤형 조사뿐만 아니라 기관 간 일관된 평가의 유지, 기관의 CS경영을 확립하도록 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의 활용성 제고 등 관련 과제도 기획 중임을 알려 드린다.

다음 포럼에는 이동훈 청와대 정책기획관을 모시고 공정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한 주제로 토론할 계획이다. 또한 12월에는 유성걸 차관과 올 한해 공공기관이 걸어온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10-21

요약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9월 27일 고용창출을 위하여 소기업들에 세금혜택과 용자를 지원하는 '2010년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에 서명하였음
- 스페인 정부는 2010년 9월 24일 증세정책을 주로 담은 2011 예산안을 확정함
 - 세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에서 최고세율 인상, 각종 공제혜택 축소, 법인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임
-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0년 10월 1일 201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18% → 20%), 자본이득세율(18% → 20%), 상속세율(5% → 10%) 인상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 2010년 초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2010년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H.R. 5297))'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9월27일에 대통령 서명을 받음으로써 법률로 발효되었음
- '2010년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H.R. 5297))'은 소기업들에 세금혜택과 용자를 지원함으로써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0억달러의 세금혜택을 기업들에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법률에는 8개의 새로운 세금감면제도, 소규모 은행에 대한 투자를 위한 300억달러의 펀드 조성, SBA대출¹⁾ 한도액 확대 연장, 주정부 재정안 지원 등에 대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가. 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기존 법률에 의하면 적격 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은 자본이득 중 75%에 대해서만 면세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법률로 인하여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적격 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모든 자본이득이 전액 면

1)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프로그램

세됨

- 이번 법률로 인하여 100만 이상의 소기업들이 모든 자본이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 형태는 일반 주식회사(C-Corporation)이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LLC)나 S법인(S-Corporation)²⁾은 동 혜택의 대상이 아님
- 일반주식회사(C-Corporation)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5천만달러 이하의 기업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나. 소기업의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장

- 기업들은 내국세법 §179상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액은 작년의 경기부양책으로 25만달러로 늘어났으나 이번 법률을 통하여 한도액이 50만달러까지로 확장되었음
- 이 항목은 2009년말이 일몰종료 시점이었으나 2011년까지 유효하도록 일몰 연장됨
- 450만개의 소기업들과 개인들이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내국세법 §179상 자산의 범위도 확대됨

다. 50%의 보너스 감가상각

- 내국세법 §168(k)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시킴으로써 2백만개의 기업들이 새로운 자산 구입에 대하여 올해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라.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비용에 대한 공제

- 2백만명의 자영업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음
-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제제도는 연간 19억달러의 조세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마. 핸드폰 공제제도에 대한 단순화

- 소기업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한 비용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단순화하였음

바. 창업비용에 대한 비용공제 한도 증가

- 올해부터 창업비용에 대한 비용공제 한도를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가시킴
- 기존 법률에 따르면 창업비용이 5만달러를 초과할 때 5천달러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창업비용이 6만달러가 넘게 되면 1만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 일반사업 세액공제 5년 이월공제

- 기존 법률하에서 내국세법 §39상 일반사업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이월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해짐
- 소기업들이 이익을 낸 연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그 후에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액을 직전연도에 낸 세금에 한하여 환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과거 5개 연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할 수 있게 됨

2) 내국세법 Chapter 1의 Subchapter C에 규정된 법인의 형태



아. 세무신고에 대한 가산금 개정

-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³⁾ 기존에는 고정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새로운 법률하에서는 세무신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75%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 이 경우, 해당 가산금은 법인의 경우 20만달러, 개인의 경우 1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2. 스페인 정부 2011 예산안 확정

- 정부는 2010년 9월 24일 2011 예산안(Budget for 2011)을 확정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1 예산안은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최고세율 인상, 각종 공제혜택 축소 등의 증세정책과 아울러 법인세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가.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공제혜택 대상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수를 확대함
- 개인소득세 세율에서 현 43% 구간 외에 44% 및 45% 구간을 추가함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세율

과세소득(EUR)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 17,707.20	24	
17,707.20 ~ 33,007.20	28	
33,007.20 ~ 53,407.20	37	
53,407.20 ~ 120,000	43	43
120,000 ~ 175,000		44
175,000 ~		45

- 2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정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 소득공제 대상 소득을 EUR 300,000로 제한함
- 주된 거주지의 취득 및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세소득이 EUR 24,170.20 미만인 납세자로 제한함
- 이는 거주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에도 적용될 예정임

나. 법인세 분야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EUR 8백만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은 요건 충족시 자유 상각 및 가속상각 허용, 과세소득 중 첫 EUR

3) 내국세법 §6011상 신고해야 할 거래와 신고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

120,202.41에 대해 25%의 세율(일반 법인세율 30%) 적용,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해 10%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법인에 대해 향후 3년간은 관련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간접세 분야

-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세(capital duty)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 내국법인의 자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본세가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2011년 및 2012년 동안 자본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함

3. 아이슬란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 정부는 2010년 10월 1일 2011 예산안(Budget Bill for 2011)을 의회에 제출함
 - 2011 예산안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세율 인상 등의 증세정책과 아울러 재정지출 감소정책⁴⁾이 계획되어 있음
 -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법인세 분야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비롯하여 환경 및 천연자원세 세율을 인상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과세를 도입함
 - 법인세 세율을 현 18%에서 20%로 2%p만큼 인상함
 -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특별과세(special tax)를 도입함

• 탄소제품(carbon products)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및 천연자원세(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tax)를 인상함

-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본이득세 및 상속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과세제도를 개편함
 -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 세율을 현 18%에서 20%로 2%p만큼 인상함
 - 상속세 세율을 현 5%에서 10%로 5%p만큼 인상함
 - 부유세 과세제도(net wealth taxation regime)를 개정함
 - 개정 관련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은 2010년 7월 IMF가 발행한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아이슬란드의 재정붕괴 이후 아이슬란드에 금융지원을 해 온 IMF에서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세수를 GDP의 2%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저세율 항목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음
 - 2011 예산안에서는 ISK 8billion 규모의 신규 세수 확보를 계획하며 IMF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외에 부유세, 상속세, 탄소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세율은 인상하지 않을 계획임

4) 재정지출을 2010년과 비교하여 약 ISK 28billion만큼 삭감할 계획에 있음



동향 10-22

요약

- 일본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담배세를 현재 세율 대비 40% 인상함
 - 동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세부담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됨
- 프랑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0년 9월 29일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조세혜택의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재정법(Finance Bill)을 채택함
-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10년 10월 14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1%p) 및 연금저축 연간공제액 인하(£255,000 → £50,000) 등의 개정세법 내용을 발표함
 - 아일랜드 및 폴란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조세정책을 추진함

1. 일본의 담배소비세 40% 인상

- 일본은 2010년 10월 1일부터 담배에 관한 세금을 40% 인상¹⁾하며 개정 전·후의 담배세율은 <표 1>과 같음

1) <표 1>에서 인상액 총액/개정 전 세액(=3,500/8,744)으로 계산하여 40%임

<표 1> 개정 전·후의 비교

구분	세목	세율(1,000개비당) ¹⁾		
		개정 전	개정 후	인상액
국세	담배세	3,552엔	5,302엔	1,750엔
	담배특별세	820엔	820엔	-
지방세	도부현담배세	1,074엔	1,504엔	430엔
	시정촌담배세	3,298엔	4,618엔	1,320엔
합계		8,744엔	12,244엔	3,500엔

주: 1) 자료에서는 제조담배와 구3급품의 제조담배로 나누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조담배만을 제시하였고, 구3급품의 제조담배도 40%의 세율이 인상됨
자료: 일본국세청, 「たばこ税手続品課税関係 Q&A」, 2010. 6

- 제조담배는 ① 쉐련, ② 파이프담배, ③ 엽쉐련, ④ 각련, ⑤ 종이용 담배, ⑥ 파이프용 담배로 구분됨
- 쉐련 이외에 제조담배의 수량에 대해서는 ②와 ③은 1그램을 1개비로 환산한 것이고, ④, ⑤, ⑥은 2그램을 1개비로 환산한 것임

참고 1 일본의 담배세 구성과 과세체계

- 일본의 담배세는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는 담배세와 담배특별세, 지방세는 도부현 담배세와 시정촌 담배세가 있음
- 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됨
 - 국세인 담배세는 제조담배가 제조장에서 출하될 때, 제조업자에게 부과됨
 - 도부현 담배세나 시정촌 담배세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제조담배를 판매할 때 도매업자에게 부과됨

참고 2 우리나라의 담배세 과세체계

-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며, 제조장으로부터

터 담배를 반출하는 제조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세율은 <표 2>와 같음

〈표 2〉 우리나라의 담배세율

담배의 종류	세 율
켈 련	641원/20개비
파이프담배	1,150원/50그램
엽 켈 련	3,270원/50그램
각 련	1,150원/50그램
전 자 담 배	400원/용액1밀리리터당

참고 3 우리나라와 일본의 담배세율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3급품 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만 있을 뿐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약 3.5배²⁾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약 4.9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우리나라의 세율은 1개비당 32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일본은 개정 전에는 1개비당 8.7엔의 세금을 납부하다가 개정 후에는 12.2엔의 세금을 납부하게 됨
 - 한국과 일본의 환율을 1:13 정도로 보고 계산함
- 파이프담배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4.9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6.8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파이프담배는 1그램당 23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세율도 1그램당 1본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에는 1개비당 8.7엔, 개정 후에는 1개비당 12.2엔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엽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1.7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4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엽켈련은 1그램당 65.4엔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일본도 1그램을 1본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세율인 1개비당 8.7엔과 개정 후 세율인 1개비당 12.2엔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각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정 전에는 2.4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3.4배의 담배세를 부담하게 됨
 - 각련은 1그램당 23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세율은 2그램을 1본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음
 - 일본의 개정 전 세율인 1개비당 8.7엔과 개정 후 세율인 1개비당 12.2엔의 세금과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세율은 46원이 됨

2. 프랑스 각료회의의 2011년 재정법 채택

- 프랑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0년 9월 29일에 2011년 재정법(Finance Bill)을 채택하였음
 - 2011년 재정법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budget

2) 일본의 경우 세율 인상 전에는 8.7엔×13=113.1원의 담배세를 부담하다가 세율 인상 후에는 12.2엔×13=158.6원을 부담하게 되어, 인상 전에는 약 3.5배 (=113.1/32), 인상 후에는 약 4.9배(=158.6/32)의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음



deficit)를 GDP의 3%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i) 조세혜택과 조세제도상의 허점(loophole)을 감소시켰으며, (ii) 특정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도록 제정됨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요한 2011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가. 법인세

- 경제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R&D세액 환급제도를 상시적으로 모든 법인에 허용함
 - R&D세액 환급제도 : 적격한 R&D 지출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하여 R&D세액을 즉각적으로 환급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R&D 관련 지출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당기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후, 미공제세액을 차기기로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함
 - 프랑스는 R&D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 2009년 한시적으로 R&D세액 환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세법 개정으로 이를 상시화함

-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를 자본이득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특히, 관련 소득의 경우 장기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특수관계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관계를 모두 포괄함

-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를 손금에 일률적으로 산입하거나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따라서 2011년 이후에는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를 손금에 일률적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보험회사가 설정한 준비금(reserve)에 관하여 전액 손금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보험회사 설정 준비금은 10%의 저율로 과세하게 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설정한 준비금의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함

나. 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현행 40%에서 41%로 인상됨
 - 최고한계세율 구간은 EUR 69,783을 초과하는 구간임
 - 2009년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3〉 2009년 소득세율

과세소득구간(EURO)	세율
0 ~ 5,875	0
5,875 ~ 11,720	5.5%
11,720 ~ 26,030	14%
26,030 ~ 69,783	30%
69,783 초과	40%

- 분리과세 선택시의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8%에서 19%로 인상됨
 -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18%의 일률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유효세율은 30.1%임

-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인상됨
 - 프랑스의 경우, 자본이득은 일률과세(flat tax)함
 - 유가증권 등 동산의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8%에서 19%로 인상됨
 -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관한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인상됨
- 면세 가능한 동산의 소액자본이득에 관한 면세가능 한도의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EUR 25,830 이하의 동산의 소액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음
- 주된 거주지 관련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된 거주지의 건설·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 프랑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부담금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세법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함

다. 부가가치세

- TV, 전화, 및 인터넷 통합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인 19.6%로 확정하여 통합서비스에 대한 세율을 명확하게 규정함
 - 현행 세법에서는 통합서비스에 포함된 일부 개별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경감세율인 5.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이 명확하지 않았음

3. 기타 유럽국가

가. 영국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 영국에서는 2010년 10월 14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및 연금저축공제 축소 등의 개정세법 내용을 발표함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세율을 2011년 4월 6일부터 1%p만큼 인상함
 - 근로자 및 고용주(Class 1)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율을 1%p 인상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12%, 2%, 고용주에 대해서는 13.8%의 세율을 적용함

〈표 4〉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1)

주간 소득(£)	개정 전		개정 후(2011. 4. 6~)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 110	0	0	0	0
110 ~ 844	11%	12.8%	12%	13.8%
844 ~	1%		2%	

- 자영업자(Class 4)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세율 역시 8%, 1%에서 9%, 2%로 1%p만큼 인상함

〈표 5〉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4)

주간 소득(£)	개정 전	개정 후(2011. 4. 6~)
~ 5,715	0	0
5,715 ~ 43,875	8%	9%
43,875 ~	1%	2%

- 개인소득세에서 연금저축공제 혜택을 축소함
 - 2011년 4월 6일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연간공제액



(annual allowance)을 £255,000에서 £50,000으로 인하함

- 2012년 4월 6일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평생공제액(lifetime allowance)을 £1.8백만에서 £1.5백만으로 인하함

나. 아일랜드 부가가치세율 인상계획

- 아일랜드에서는 급증하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당초 검토했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은 €150억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자 집단에게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힘
 - 12.5%의 법인세율은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 15년간 국가 산업정책의 초석(cornerstone)이 되어 왔음
 -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신장하여 Dell, Intel, Pfizer 등과 같은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아일랜드 내에 그 기반을 두는 데 기여하였음
 -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
- 사실 아일랜드는 2009년 부가가치세율을 0.5%p 인상한 바 있으나 주변국가인 영국과의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2010년 이를 다시 낮추었음
 -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관련 낮은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해 왔음

- 아일랜드 역시 금융위기가 시작될 무렵인 2008년 10월 부가가치세율을 0.5%p(21% → 21.5%) 인상하여 2009년 1월부터 적용한 바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북아일랜드(17.5%³⁾)로 국경을 넘어가자 정부는 2010년 1월 이를 다시 21%로 인하하였음

- 최근 영국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결의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정책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음
 - 영국의 보수당-자민당 연정(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은 2011년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17.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결의함
 - 정부는 이웃 나라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힘을 얻어 부가가치세율을 2%p 정도 인상(21% → 23%)할 계획에 있음

다. 폴란드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등

- 폴란드 재무부는 2010년 10월 9일 재정법(Law on Public Finance) 개정안을 발행함
 - 이는 재정결손 회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및 개인소득세 공제항목의 일부 폐지 등의 증세 정책을 담고 있음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011년부터 22%에서 23%로 인상하고 경감세율은 3%, 7%에서 5%, 8%로 인상함
 - 또한 2010년 공공부채(public debt)가 GDP의 55%를 초과하는 경우 2012년과 2013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을 각각 1%p씩 추가 인상하여

3)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7.5%로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

2013년에는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공공부채의 규모는 2011년 5월에 발표될 예정임

〈표 6〉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1 ¹⁾	2012 ²⁾	2013 ²⁾
경감세율	3%, 7%	5%, 8%	6%, 9%	7%, 10%
표준세율	22%	23%	24%	25%

주: 1) 2011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확정됨
 2) 2012 및 2013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부는 2010 과세연도의 공공부채 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함
 - 가족공제(family credit)
 - 인터넷 공제(internet relief)
 - 개인적으로 수행한 전문 활동(professional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 또는 50%의 소득공제



정책흐름

-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3/4분기 추진상황 점검
- 경차 타시면서 세금 절약하세요
-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결과
- 10. 9월 취업자 24.9만명 증가
- 국세통계로 본 여성 납세자의 출산 현황
-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 본 자료는 2010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발표한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추진배경

-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 제고

■ 고시 이자율 등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개념)**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

※ 산식(증여이익 계산방법)

- 무당 대출시 : 대출금액×고시이자율

- 저율 대출시 : [대출금액×고시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고시이자율)** (현행) 9.0% → (변경) 8.5%

계산례(자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대부받는 경우)

구 분	고시이자율	증여재산가액
현 행	9.0	300,000,000×9.0% = 27,000,000
개 정	8.5	300,000,000×8.5% = 25,500,000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현행 8.5%)과 유사*하므로 동 이자율과 형평 유지

* 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 경우 적정이자율로 받을 수 있는 이자액과 실제 수령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봄

②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등 평가 이자율

- **(개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 고시이자율은 평가 당시 기업의 조달자금이자율을 반영

$$\text{※ 신주인수권의 가치} = \left[\frac{\text{만기상환금액}}{(1+\text{발행이자율})^n} \right] - \left[\frac{\text{만기상환금액}}{(1+\text{고시이자율})^n} \right]$$

- **(고시이자율)** (현행) 6.5% → (변경) 8.0%

-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하였으나, 비상장기업은 이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조정

* 기존의 고시이자율 산정기준이 된 신용등급(AA)과 투자가 능 신용등급(BBB- 이상) 중 가장 낮은 신용도(BBB)에 해당하는 회사채이자율의 중간 수준

** '10년 3/4분기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 : (AA-) 4.63%, (BBB-) 10.58%

③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환원율

- **(개념)**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기중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변환시키는 환원율

상증법상 1주당 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① 1주당 가치

$$= \frac{(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5}$$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frac{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text{순손익가치환원율}}$$

- **(고시환원율)** 현행 수준(10%) 유지
 - 기업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수준 유지

④ 정기금 평가 할인율

- **(개념)** 미래의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

* 정기금 : 연금, 부양료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수취할 수 있는 채권

* 유기(有期)정기금 평가액 = $\sum_{t=1}^n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text{고시할인율})^t}$

- **(고시할인율)** 현행 수준(6.5%) 유지
 - 현행의 정기금 평가 고시할인율(6.5%)이 개인의 자금운용 및 조달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 당좌대출이자율*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 유지

* '10년 상반기 가중평균 당좌대출이자율 : 6.84%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 본 자료는 2010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 국채과에서 발표한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고채 전문 딜러(PD : Primary Dealer)의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PD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기획재정부는 '09. 12월 호가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시행한 바 있음

- '09. 12월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시행 이후 실질적인 장내거래가 증가하고 PD들의 시장조성 기능이 강화

- 특히 10년물 이상 장기물 거래가 크게 증가

* 장내시장 Dealing 거래 비중 추이 : ('09. 12) 17.6% ('10. 1분기) 65.3% ('10. 2분기) 85.4% ('10. 3분기) 89.2%

* 장기물 장내거래 건수 : ('09. 12) 735건 → ('10. 9) 5,593건

- 그러나 아직 국고채전문유통시장(장내거래)이 Dealer's Market으로 정착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

국고채 지표물 거래량(조원)

	'09. 4분기	'10. 1분기	'10. 2분기	'10. 3분기
장내거래(비중)	56(31%)	34(16%)	62(25%)	97(37%)
장외거래(비중)	126(69%)	181(84%)	190(75%)	162(63%)

☞ 국고채 장내·장외 시장의 균형발전 및 PD들의 시장조성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

주요 내용

①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 조성 기능 강화

- 최대 허용 호가 갭(gap)을 축소하여 거래체결 가능성 확대

* 다만, 시장참가자들이 호가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년·20년물의 경우 점진적으로 축소

매도-매수 호가 갭의 최대 허용범위 축소 방안

현 행	개 선
- 3년물 : 3원	- 3년물 : 2원
- 5년물 : 5원	- 5년물 : 3원
- 10년물 : 10원	- 10년물 : 7원 ('10. 12월) → 5원 ('11. 4월)
- 20년물 : 20원	- 20년물 : 15원 ('10. 12월) → 10원 ('11. 4월)

- 의무 제시 호가 개수를 5개 → 10개로 확대
- 호가 수량이 크게 감소한 거래일에 호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장이 불확실한 거래일의 호가 제시 유인 강화

② PD의 유통·보유실적 평가 개선

- 지표채권 장내거래 실적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장내거래 체결을 유도

PD의 유통실적 평가 개선안

현행	개선
- 장내·외 거래량을 단순 합산	- 장외거래량+장내 비지표채권 거래량+장내 지표채권거래량×2
- 10년 이상 장기물 유통실적은 2배의 가중치 부여	- (좌 동)

- PD사들이 장기 국채선물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년 국채선물 거래 실적을 PD 평가에 반영
- 국고채 최소 보유기준을 2천억원 → 3천억원으로 상향하여 보유실적 평가기준을 현실화

③ PD의 인센티브 차등화

- 실적이 우수한 PD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PD의 인센티브는 축소하여 PD 간 시장조성에 대한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
-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지원 혜택의 정도를 차등화하고 하위 5개 PD는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
* PD금융지원(국채금융) : 공공자금관리기금(국고채 발행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RP 거래 형태로 PD에게 低채(콜금리의 30~80%)로 금융지원

PD사 금융지원 차등화 방안

현행	개선
- (상위 5개 PD) 콜금리×0.3	- (상위 5개 PD) 콜금리×0.3
- (차상위 5개 PD) 콜금리×0.5	- (차상위 5개 PD) 콜금리×0.5
- (기타 PD) 콜금리×0.8	- (기타 5개 PD) 콜금리×0.8 ※ 최하위 5개 PD는 금융지원 제외

④ PD 재무건전성 요건 강화

- 국채 거래 시스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PD들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

PD의 재무건전성 요건 강화 방안

현행	개선
- (은행) BIS비율 8%	- (은행) BIS비율 10% (외은지점 20%)
- (증권사) 영업용자기자본비율 150%	- (증권사) 영업용자기자본비율 350% ※ 다만, 기존 PD의 경우 '12년부터 적용
〈신설〉	- 최저 자기자본 요건 신설 • (국내은행) 4조원, • (외은지점) 5천억원 • (증권사) 4천억원

기대 효과

- PD들의 장내시장에서 Dealing 거래가 활성화되어 Dealing 거래와 Brokerage 거래의 균형발전 도모
- PD들의 시장조성 역량을 강화하고 PD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전반적으로 국채시장 활성화·선진화

추진 일정

- 금번 제도개선은 관련규정(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부 고시)에 반영하여 '10년 11월부터 시행
- 다만, 호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3/4분기 추진상황 점검

* 본 자료는 2010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3/4분기 추진상황 점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 수립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음
- '10년도 3/4분기까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폐합)** 3/4분기 중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출범('10. 8. 18일)함에 따라 모든 대상기관 36개 (→16개)의 통합을 완료
 - 폐지 대상기관 5개는 기 폐지 완료('09.12)
 - **(기능조정)** 3/4분기 중 4대보험 징수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기능조정 대상기관 총 20개 중 12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완료
 - * 4대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조직·인력 설계 완료(8. 17),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8. 31)
 -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기능 축소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중
 -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관련 기능 축소 등 그 외 기관들도 당초 계획에 따라 '10~'12년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중
 - **(민영화 및 지분매각)** 24개 대상기관 중 6개는 매각 또는 상장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기관도 대부

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 추진중

* 매각(3) : 농지개발('09. 8), 안산도시개발('09. 10), 한국자산신탁('10. 3)

* 상장(3) : 그랜드코리아레저('09. 11), 한국전력기술('09. 12), 지역난방공사('10. 1)

* 민영화 연기(1) : 대한주택보증('10. 5. 19,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 다만,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경우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향후 금융위에서 금융산업 전반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

* 준비중(7) :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자회사

• **(출자회사 정리)** 3/4분기 중 4개* 출자회사가 추가로 정리됨에 따라 정리대상 출자회사 총 131개 중 58개** 회사에 대한 지분매각·청산·통폐합을 완료

* 4개 출자회사 : GS퓨얼셀, 메디엔인터내셔널, 벨룩스소프트, 티벳시스템

** 58개 : 지분매각 51개, 폐지·청산 5개, 통폐합 2개

- 나머지 73개 기관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정상 추진중

• **(정원 감축)** 129개 대상기관의 정원 조정을 모두 완료(△2,2만명)

*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3천여명 포함시 총정원 감축 △2,5만명

-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은 각 기관별로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12년말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

- **(보수체계 합리화)** '10. 6월 간부직 대상의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을 권고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교육 실시(7~9월)
- 3/4분기 중 152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제도설계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
- **(노사관계 선진화)** '10.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법상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도가 공공기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공시 및 평가제도에 반영('10. 8~10월)
 - * 통합공시 : 타임오프제도 도입 여부, 법상 한도, 체결내용 공시항목 추가('10. 8. 31)
 - * 경영평가 : '합리적이고 적절한 노사관계 관리노력(타임오프제도 등) 반영('10. 10. 1)
-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작업에 착수*('10. 9월)
 - * 민관합동 개선 TF를 구성하여 Kick-off 회의 개최('10. 9. 2)
 - * 민관합동 개선 TF : 평가위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등 민간전문가, 기재부 담당자
- 민관합동 개선 TF에서 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수행중이며,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
 -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 개최('10. 26~27일)

참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 및 지분매각 (2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터 •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일부 매각(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36→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공+토공 • R&D관리기관 : 9 →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경부) 6 → 3개, (교과부) 3 → 1개 •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경부) 2 → 1개, (문화부) 3 → 1개, (방통위) 3 → 1개, (행안부) 2 → 1개 •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도입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조정 (2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회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경차 타시면서 세금 절약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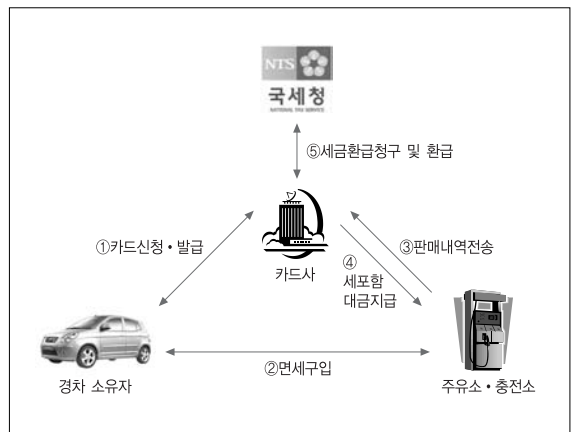
* 본 자료는 2010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 발표한 「경차 타시면서 세금 절약하세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현재 경차를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휘발유·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을 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유류세 환급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9. 28)에서 통과되었으며
- 금번 개정안은 2010. 10. 1(금)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1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임
 - * (예) :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소나타 1대인 경우, 승용차가 2대이므로 환급 안 됨
 -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봉고 1대인 경우, 마티즈만 환급
 -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인 경우, 둘 다 환급
- 다만,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됨

※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 ARS 080-800-0001(경차사랑 1번선택), 인터넷(www.shinhancard.com) 또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전국지점 방문(기존 환급대상자는 既 발급된 카드활용 가능, 1544-7000)



* (사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휘발유 가격 1,700원/ℓ 가정시 약 29.4ℓ 주유하면

- 추후 카드사가 유류세 7,353원(=250원/ℓ×29.4ℓ)이 차감된 42,647원만 카드대금 청구하게 됨

경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결과

* 본 자료는 2010년 10월 24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경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10.22일(금)~23일(토)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① 세계경제와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 ②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③ 금융규제 개혁, ④ 개발, 금융소의 계층 포용, 에너지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음

주요 논의내용

[세계경제/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

- **(경기판단)**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하며 국가별 · 지역별로 회복세에 차이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 국가별 · 지역별로 차별화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조와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환율정책)** 환율 문제를 특정국 이슈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 균형있게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3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음
 - ①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보다 시장결정적인 (more 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로 이행함

- ②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함
- ③ 선진국들은 자국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vigilant)함
- 한편 G20은 국제통화체제(IMS)의 안정성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주요국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에 대한 IMF의 분석 · 평가 노력을 지지하였음

- **(글로벌 불균형)** 아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여 제기한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큰 틀을 마련하였음
- 정상수치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at sustainable levels) 유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공조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 향후 회원국들이 합의할 예시적(indicative)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규모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G20 상호평가과정(Mutual Assessment Process)을 통해 근본 원인을 진단하기로 하였음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국 및 지역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키로 함으로써 일부 예외를 인정함*

* (예) 원자재 대규모 생산국(사우디, 호주 등)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체화와 집행에

대한 신뢰성이 강조되었고, 한편으로 동시다발적인 재정건전화는 경기회복에 미치는 위험도 유념하기로 하였음

- **(보호주의 배경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한편,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수준 이상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 합의하고 2012년 IMF 총회까지 추진을 완료하기로 함
- **(쿼터 개혁)** 과다에서 과소대표국 및 역동적 신흥개도국(dynamic EMDC)으로 각각 6% 이상 쿼터를 이전하기로 함
- 아울러 IMF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100% 쿼터 증액에도 합의함
- 한편, 쿼터 공식은 2013. 1월까지 개선하기로 하고 다음 쿼터 재조정은 2014. 1월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음
- **(지배구조 개혁)** 현행 이사 수(24석)를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을 2석 축소하여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8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합의함
- 또한 다국가 이사실(constituency)의 두 번째 대리이사제 도입 및 지명이사제 폐지*(all-elected board)에 합의함
- * 현재 5명의 지명이사(미, 영, 프, 독, 일)를 나머지 19명의 일반이사(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중동)로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의미함
- **(향후일정)** IMF 내부절차(이사회 의결 → 총회 의결)를 통해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임
-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하여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특정국가 위기 우려시 예방적 신용라인 개설 제도 개선을

환영하였음

- 나아가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IMF에 이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도록 자제를 부여함

[금융규제 개혁]

- 주요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에 대한 바젤위원회, FSB 등 국제기구들의 작업결과를 점검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우선순위를 구체화하였음
- **(새로운 기준과 원칙 마련)** 바젤위원회(BCBS)의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방안을 환영하고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마련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책체계(policy framework) 및 이행일정(timeframe)을 채택하였음
- **(합의사항 이행강조)** 장외파생상품, 보상, 회계기준 등 신규 기준 및 기존합의 사항의 일관되고 차질없는 이행에 합의함
- **(신규이슈 의제화)** 아울러 아국이 제시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신흥국 관점의 규제 개혁, shadow banking 규제 방안 등의 의제화 필요성에 합의함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 **(개발)** 개발 워킹그룹이 마련 중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식량안보기금의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국제개발협회(IDA) 재원보충에 합의함
- **(금융소외계층 포용)** 서울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성과물에 대해 합의함
- * 관련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조정체계 설립,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 및 우수사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

- (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과 유가 변동성 분야의 논의 진전을 확인하고 서울 정상회의시 진전 사항을 점검·평가키로 함

양자 및 다자면담

- 윤증현 장관은 10. 21(목)~22(금)간 IMF 총재 및 캐나다, 미국,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협력체계,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쟁점을 조율함
- 이와 별도로 IMF 개혁안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 협상을 증재하고 G7, BRICs, IMF와의 다자면담을 개최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 의장국으로서 중재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G20의 정책공조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계경제 협력의 Premier forum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었던 '환율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환율 이슈에 대한 G20의 공통인식을 도출하고
-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자간 정책공조의 틀을 마련함
- 서울 정상회의시 과거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와 관련, 개별 회원국의 정책 약속과 공조 방향을 종합한 행동계획 (comprehensive action plan)*을 마련하였음
- * 재정, 통화, 금융, 구조정책, 환율 정책 등 포함
- IMF 개혁과 관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 수준 이상으로 신흥개도국의 쿼터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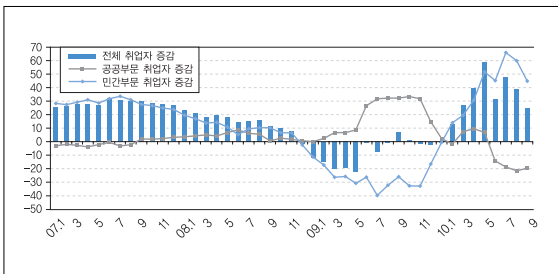
- 금융규제 분야에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등 기존과제를 마무리하고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이슈의 의제화 추진에 합의하였음
- 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FCL 개선, PCL 신설 등 1단계 성과에 이어 서울 정상회의시 추가과제 논의와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금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대한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10. 9월 취업자 24.9만명 증가

* 본 자료는 2010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에서 발표한 「10. 9월 취업자 24.9만명 증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 9월 취업자는 8월(+38.6만명)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9만명 증가하는 회복세 지속
- 민간부문(공공행정 이외 부문) 취업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인 44.5만명 증가
- 지난 달(+59.9만명)에 비해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추석 효과 등으로 제조업·건설업의 증가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
- 제조업은 여전히 20만명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25.2만명), 민간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지속(+22.7만명)

취업자 증감 추이



- 10월에도 공공부문 취업자 감소는 계속될 것이나,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 전망

1. 고용 동향

① (취업자) '10. 9월 취업자(2,405.4만명)는 전년동월 대비 24.9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 31.4 → (7) 47.3 → (8) 38.6 → (9) 24.9

- (공공부문)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정부일자리 사업에 따른 거저 효과에 따라 공공부문 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19.6만명)

* 공공부문(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5) 6.9 → (6) △14.1 → (7) △18.5 → (8) △21.4 → (9) △19.6

- (민간부문)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44.5만명)

* 민간부문(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제외)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5) 51.7 → (6) 45.5 → (7) 65.8 → (8) 59.9 → (9) 44.5

- (산업별) 추석 효과 등에 의해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나,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가 50.3만명 증가

*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 49.3 → (7) 69.9 → (8) 63.5 → (9) 50.3

- 제조업 취업자는 '00. 8월 이후 최대로 증가한 전월(+29.7만명)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20만명 이상의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25.2만명)

* 제조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 18.1 → (7) 23.8 → (8) 29.7 → (9) 25.2

- 공공행정을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는 보건·복지(+17.8만명), 사업지원(+11.4만명), 금융·보험(+5.2만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22.7만명)

* 민간서비스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26.6 → (7)36.8 → (8)25.0 → (9)22.7

· 다만,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구조조정 상황을 반영하여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모습(Δ9.2만명)

*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 Δ12.9 → (7)Δ2.1 → (8)Δ9.4 → (9)Δ9.2

- 건설업은 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하여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4.9만명)

* 건설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 6.7 → (7) 11.8 → (8) 10.9 → (9) 4.9

• **(중사상 지위별)**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상승하여 고용의 질 제고

* 상용직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 75.0 → (7) 72.5 → (8) 67.9 → (9) 61.1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 (00) 47.9 → (05) 52.1 → (09) 57.1 → (10. 9) 59.7

- 임시직(Δ4.5만명)과 일용직(Δ15.1만명)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

* 임시직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Δ11.6 → (7)Δ4.0 → (8)0.5 → (9)Δ4.5

* 일용직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Δ17.7 → (7)Δ4.6 → (8)Δ11.5 → (9)Δ15.1

② **(고용률·실업률)**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 대비 Δ0.1%p 하락

• 실업률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등으로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증가(+3.2만명)함에 따라 전년동월과 동일한 3.4%

* 조사요원 모집에 대한 문의·신청자들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취업자가 아닌 경우 실업자에 포함

- 조사요원 접수·채용기간(8. 24 ~ 9. 2) 동안 11.6만명 모집에 16.5만명이 신청

	'10. 6월	7월	8월	9월
고용률	59.8(+0.0)	59.8(+0.4)	59.1(+0.3)	59.1(Δ0.1)
(계절조정)	58.9	59.1	59.0	58.6
실업률	3.5(Δ0.4)	3.7(0.0)	3.3(Δ0.4)	3.4(0.0)
(계절조정)	3.5	3.7	3.4	3.7

* ()는 전년동월 대비 %p

③ (청년층) 청년(15~29세) 실업률(7.2%, 전년동월 대비 Δ0.4%p)이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청년층 고용여건은 개선이 더딘 모습

• 청년 취업자가 감소(Δ5.8만명)하고, 고용률이 하락(39.6%, 전년동월 대비 Δ0.2%p)하였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Δ8.4만명) 및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

* 청년층 인구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Δ7.1 → (7)Δ7.2 → (8)Δ7.8 → (9)Δ8.4

* 청년층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6)Δ8.6 → (7) Δ1.8 → (8)Δ5.5 → (9)Δ5.8

* 청년 고용률(%) : (10. 5) 41.4 → (6) 40.7 → (7) 41.9 → (8) 40.3 → (9) 39.6
(전년동월 대비 %p) (+0.1) (Δ0.5) (+0.1) (Δ0.3) (Δ0.2)

- 인구 효과가 없었다면 청년층 취업자는 약 1.4만명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

- 또한, 청년 전체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20대에 비해 고용률이 크게 낮은 15~19세의 청년층 내 인구 비중이 상승한 데 기인

* 청년층 내 15~19세 인구 비중(%) : (09. 9) 33.8 → (10. 9) 34.5

* 연령별 고용률(10. 9. %, 전년동월 대비 %p) : (15~19세) 5.3(+0.5%p), (20~29세) 57.7(0.0%p)

2. 평가 및 전망

① **(평가)** 추석 효과 등에 의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용 회복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

- 제조업 가동률이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가 확대되고 민간 소비도 꾸준히 증가

*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비) : (10. 5) 39.8 → (6) 30.6 → (7) 27.5 → (8) 27.7 → (9p) 17.2

* 제조업 평균가동률(%) : (10. 4) 82.2 → (5) 82.8 → (6) 84.0 → (7p) 84.8 → (8p) 81.8

* 설비투자 증가율(% , 전년동월비) : (10. 4) 25.6 → (5) 24.3 → (6) 23.9 → (7p) 33.7 → (8p) 39.8

* 소매판매 증가율(% , 전년동월비) : (10. 4) 7.3 → (5) 3.7 → (6) 3.8 → (7p) 8.7 → (8p) 9.3

- 민간 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워크넷의 구인/구직자 비율도 6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민간 기업의 구인 수요도 지속

* 한은 인력사정 전망 BSI : (10. 6)90 → (7)91 → (8)90 → (9)90 → (10)89 (「인력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인력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100)

* 워크넷 구인/구직 비율(%) : (10. 5)69 → (6)65 → (7)63 → (8)66 → (9)60

② **(전망)** 10월에도 공공부문 취업자 감소는 계속될 것이나,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 전망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10월에도 지속되고, 조사요원들이 취업자로 전환되는 11월(본조사기간 : 11. 1 ~ 11. 15) 이후 사라질 전망

* 조사요원 선발자들이 1달 이내 발령대기자로 분류되면서 구직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자에 계속 포함

국세통계로 본 여성 납세자의 출산 현황

* 본 자료는 2010년 10월 28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에서 발표한 「국세통계로 본 여성 납세자의 출산 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추진배경

- 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별 국세통계를 발굴하여 분기별로 공개해 오고 있음

* 지난 4. 15일 처음으로 「국세통계로 본 한국의 CEO」에 이어, 6. 24일에는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발표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09년 합계출산율* 1.15는 OECD 회원국 중 최저로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을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재정·사회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성납세자의 출산현황을 분석·공개하게 됨

* 여성(15~49세 기준) 1명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분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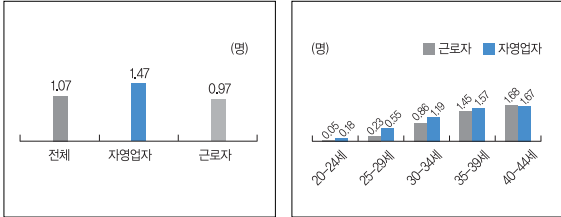
- '08년 기준 만 20~44세의 여성 납세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자(근로자 2,274천명, 자영업자 584천명)
- '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

2. 평균 자녀 수 및 최초 출산연령

1 여성 납세자 자녀 수 1.07명,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많아

- 자녀 수 ... 자영업자 1.47명 · 근로자 0.97명, 40대 초반은 근로자가 더 많아
- '08년말 현재 여성 납세자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1.07명이며, 유형별로 자영업자가 1.47명이고, 근로자는 0.97명으로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더 많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초반은 자영업자의 출산율이 훨씬 높으나, 40대 초반은 봉급생활자가 더 높게 나타남

여성 납세자 출산 현황('08년) 여성 연령대별 자녀 수 현황('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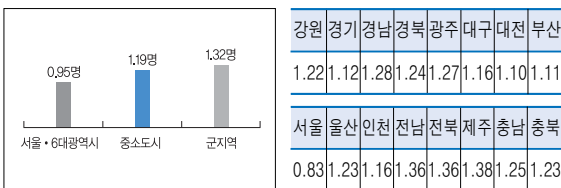
2 여성 납세자의 첫째 아이 출산연령 30.04세로 밝혀져

- 최초 출산연령 ... 자영업자 31.92세 · 근로자 29.85세
 - '08년도 중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 납세자*의 평균 연령은 30.04이며, 근로자는 29.85세로 자영업자 31.92세보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연령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아 기준 '08년 최초 출산연령은 29.60세임

3 근지역이 도시보다 자녀 수가 더 많아

- 지역별 자녀 수는 서울이 0.83명으로 가장 작아
-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 광역시 · 도별로는 전북 · 제주 · 전남 지역의 자녀 수가 많고, 서울은 0.83명으로 최저로 나타남

지역 규모별 평균 자녀 수('08년) 16개 광역시도별 현황('08년)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평균	1.22	1.12	1.28	1.24	1.27	1.16	1.10	1.11
지역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평균	0.83	1.23	1.16	1.36	1.36	1.38	1.25	1.23

4 업종별 자녀 수는 연령분포와 연관성이 높아

- 젊은 여성층이 많이 재직하는 금융업 · 보건업이 적어
- 여성 납세자의 업종별 자녀 수는 젊은 여성층(20세~29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업(0.84명) 및 보건업(0.87명)이 적고,
- 젊은 연령층 비중이 낮은(14.1~16.1%) 농림어업(1.40명)과 음식 · 숙박업(1.31명)의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납세자 업종별 자녀 수 현황

구분	농림어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업
20~29세 비율(%)	16.09	14.09	20.34	29.86	29.89	39.93	35.14
자녀수(명)	1.40	1.31	1.21	0.96	0.93	0.87	0.84

*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사업자 중 20~29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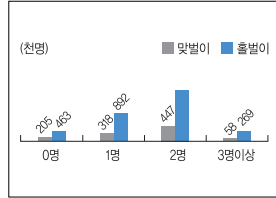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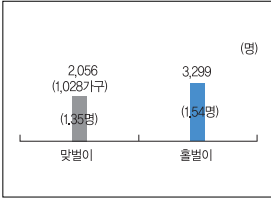
3. 근로자 다자녀 수 현황

1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수 1.35명, 홑벌이는 1.54명

-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비중은 홑벌이가 맞벌이보다 더 높아
- 부부가 모두 근로자(2,056천명)인 1,028천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약 1.35명이며, 단독 근로자인 홑벌이(3,299천명) 가구는 약 1.54명으로 맞벌이 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2자녀의 비중을 보면 홑벌이는 50.8%(1,675천 가구)로 맞벌이 43.5%(447천 가구)보다 약 7.2%p가 높으며, 3자녀 비중도 홑벌이(8.1%)가 맞벌이(5.6%)보다 높게 나타남

평균 자녀 수 현황('08년)

분석대상 가구의 자녀 수 현황('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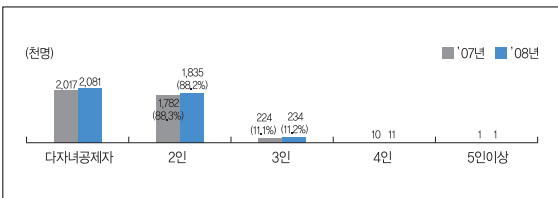
2 다자녀 공제받은 납세자의 90%는 두 자녀

- '08년 전체 근로자 12,855천명 중 약 16.2%가 다자녀추가공제*를 신고하였으며, 이는 '07년 16.5%와 유사한 수준임

* 연말정산시 자녀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08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은 납세자 2,081천명의 약 88.2%(1,835천명)가 2자녀 공제자에 해당되고, 3자녀는 약 11.2%(234천명), 4자녀 이상은 0.6%(11천명)로 나타남

다자녀공제 자녀 수 현황('08년)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납세실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
- 더불어, 각계 각층의 통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할 예정임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RFID태그 부착 · 유통 의무화

- 무자료거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 근절 -

* 본 자료는 2010년 10월 25일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RFID태그 부착 · 유통 의무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 첨단 IT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임
- 2010. 11. 1부터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하여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 실시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임
 - 《대상 주류》
 - 원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1. 첨단 IT기술을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

-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함으로써
 -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하여 출고한 후
 -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칩을 제품에 부착한 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유통을 관리하는 기술

2. 2010. 11. 1부터 서울지역에 RFID태그가 부착된 제품 유통

- 국세청은 고시를 통하여 2010. 11. 1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 ·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따라서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는 서울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의 병마개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 도매상에 판매할 때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구입자의 인적사항, 제품명, 수량, 거래일자 등의 유통정

보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 도매상에서도 서울지역의 주류 소매점 및 유통주점에 위스키를 판매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 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 소진을 위하여 11. 3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내년 1. 1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가짜양주 여부 확인 가능

-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 됨
-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RFID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금년 12월중 동 휴대폰이 상용화되면 내년 1. 1부터는 서울지역 유통업소마다 휴대폰을 비치하게 하여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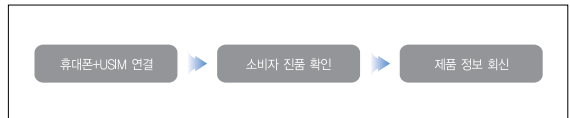
4.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로 숨은 세원 양성화 기대

- 국세청에서는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 거래자료와 대금 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하여 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통업소 등의 숨은 세원 양성화 및 가짜양주가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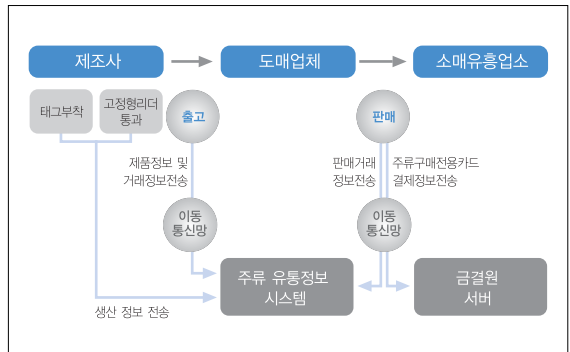
되고

-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RFID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흐름도



휴대폰을 이용한 진품확인 흐름도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액

1.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액

구 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호주	483.1	508.6	552.9	606.5	680.8	743.4	834.7	947.0	1414.8
오스트리아	452.0	499.1	525.3	562.3	619.8	691.5	816.6	1014.1	1355.9
벨기에	547.4	623.8	678.3	740.1	822.8	927.9	1071.6	1321.1	1744.5
캐나다	720.1	816.1	895.6	997.4	1162.3	1261.5	1387.7	1598.7	1823.3
체코	-	-	-	-	-	-	-	-	-
덴마크	640.0	757.3	832.9	931.8	1044.8	1295.8	1550.1	1862.8	2411.7
핀란드	554.4	614.7	639.2	606.9	662.3	768.9	890.3	1056.5	1421.5
프랑스	702.4	749.7	812.3	882.2	974.2	965.1	1050.4	1293.4	1664.3
독일	618.8	664.3	671.6	720.9	853.9	1001.7	1171.9	1454.9	2008.9
그리스	154.1	183.2	204.9	230.2	260.7	282.2	309.1	353.2	428.0
헝가리	-	-	-	-	-	-	-	-	-
아이슬란드	723.5	-	-	-	-	695.7	-	-	-
아일랜드	243.0	275.8	301.4	298.8	351.7	411.4	489.7	572.7	671.4
이탈리아	328.1	350.1	397.3	440.6	472.4	521.7	585.7	675.7	738.9
일본	175.0	197.8	235.2	278.8	332.0	397.3	453.1	620.3	888.0
한국	-	-	-	-	-	-	-	40.2	48.6
룩셈부르크	644.1	666.3	687.3	722.7	836.9	1000.3	1129.3	1425.5	1961.7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537.7	602.8	672.9	753.1	850.2	965.7	1165.0	1453.4	1956.8
뉴질랜드	528.2	558.3	563.3	472.4	521.2	622.8	734.7	860.5	1176
노르웨이	633.3	704.9	808.2	880.8	987.6	1132.3	1375.3	1703.4	2218.5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75.5	85.4	103.2	114.4	131.0	161.9	183.2	220.8	289.6
슬로백	-	-	-	-	-	-	-	-	-
스페인	107.0	113.8	153.9	143.7	166.7	185.5	212.5	282.1	384.2
스웨덴	999.8	1101.0	1217.8	1359.2	1503.7	1665.2	1845.3	2237.1	2656.2
스위스	485.0	535.0	572.2	632.7	709.4	787.6	923.4	1141.6	1675.8
터키	40.5	47.4	55.0	58.8	68.8	62.7	67.0	83.7	106.7
영국	563.9	612.1	669.3	651.0	732.8	823.1	877.5	956.1	1013.5
미국	859.6	946.6	1049.6	1089.3	1290.1	1349.3	1342.1	1491.4	1645.7
OECD TOTAL	492.4	531.0	578.2	616.3	697.2	780.0	889.8	1027.8	1321.0
OECD AMERICA	789.8	881.3	972.6	1043.3	1226.2	1305.4	1364.9	1545.1	1734.5
OECD PACIFIC	395.4	421.6	450.4	452.6	511.3	587.8	674.1	617.0	881.9
OECD EUROPE	476.3	510.4	555.7	596.1	669.4	755.1	873.0	1061.6	1372.7
EUROPEAN UNION (15)	477.9	526.6	571.2	610.5	685.6	777.9	889.9	1078.6	1380.5
EUROPEAN UNION (19)	477.9	526.6	571.2	610.5	685.6	777.9	889.9	1078.6	1380.5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821.1	1979.8	2126.3	2071.1	2306.3	2587.9	3066.0	3536.4	3369.6	3241.2	3643.2	3172.7
1659.0	1920.6	2055.8	2489.3	3174.6	3731.1	4192.5	3720.8	3615.6	3634.9	3576.1	3708.9
2092.4	2616.8	2843.9	3471.3	4299.6	5027.0	5256.2	4366.0	3947.6	3801.5	3695.7	3831.8
2332.4	2448.2	2803.8	2750.2	2804.8	3073.8	3524.0	4101.9	4103.0	4388.3	4505.0	4552.6
-	-	-	-	-	-	-	-	-	-	-	-
2784.8	3075.7	3403.8	3830.8	4803.3	5733.0	5872.4	5062.0	4841.6	5090.0	5080.4	5545.9
1765.3	2242.4	2675.3	2825.3	2778.6	3277.9	3954.9	4073.5	3982.5	3784.1	4065.6	4457.4
1791.0	2344.9	2547.4	2776.1	3415.4	4278.8	5030.2	4402.2	4238.7	4085.0	3949.8	4108.0
2234.3	2430.8	2661.0	3200.7	3952.1	4664.7	5020.4	4154.5	3997.8	3984.1	3779.3	3867.1
507.3	580.1	679.2	787.8	949.4	1196.5	1202.4	1105.8	1293.8	1183.9	1171.0	1162.0
-	-	-	-	-	-	-	-	-	-	-	-
-	1904.3	-	-	-	-	4322.0	4582.7	4187.6	3258.7	3486.2	3430.6
707.5	832.8	905.6	1012.5	1232.9	1498.8	1925.4	1870.8	2006.7	2008.6	1974.8	2019.5
874.8	1003.9	1022.4	1189.2	1458.0	1760.7	2420.6	2267.0	2405.0	2640.7	2545.6	2589.6
989.3	964.3	1116.0	1387.8	2070.7	2167.4	2357.8	2630.9	2459.8	2724.0	2905.9	3110.5
73.5	91.6	134.7	169.9	231.7	299.3	288.8	313.9	335.6	374.8	386.2	387.3
2441.0	2825.7	3099.2	3792.6	4800.9	5243.8	5841.5	5022.9	4723.7	4894.9	4616.7	4884.7
-	-	-	-	-	-	507.2	620.1	428.7	400.7	449.6	450.8
2321.8	2780.0	2999.3	3559.1	4396.8	5052.9	5484.9	4485.6	4384.3	4342.8	3889.5	3902.3
1421.8	1343.2	1326.7	1544.1	1788.1	2109.5	2352.7	2599.0	2563.7	2331.6	2225.0	2299.4
2630.3	3185.8	3591.0	4204.9	4634.7	5257.9	6614.9	6725.8	6478.3	6163.0	6075.1	6594.8
-	-	-	-	-	-	-	-	-	-	-	-
339.4	397.5	440.8	469.0	491.0	542.1	730.0	744.3	724.2	680.3	615.0	647.1
-	-	-	-	-	-	-	-	-	-	-	-
455.2	573.8	585.2	709.8	903.6	1225.4	1349.7	1233.1	1199.8	1124.4	1183.4	1231.8
3027.9	3879.9	4577.4	5049.4	5610.9	6441.8	7375.0	6917.4	5965.6	5557.2	5723.2	6033.6
2002.5	2499.4	2790.4	3018.9	4203.9	4637.9	4869.7	4443.2	4599.8	4701.7	4483.0	3928.5
135.2	186.2	213.0	248.6	262.3	331.8	277.7	296.5	254.5	221.4	175.3	206.4
1201.4	1469.2	1405.0	1564.3	1890.3	2395.9	3348.1	3311.8	3358.8	3050.8	2878.9	3033.9
1821.2	1923.3	2063.5	2387.6	2642.3	2943.1	3208.6	3621.3	3751.7	3723.9	4118.0	4485.9
1559.6	1820.0	2002.8	2271.3	2712.6	3145.0	3476.7	3315.7	3200.7	3130.5	3123.0	3217.0
2076.8	2185.7	2433.6	2568.9	2723.6	3008.4	2413.2	2781.1	2761.1	2837.6	3024.2	3163.1
1076.5	1094.7	1175.9	1293.2	1599.2	1791.0	2016.3	2270.1	2182.2	2167.9	2290.0	2242.5
1609.5	1934.2	2138.6	2455.5	2958.8	3461.0	3952.0	3620.3	3484.5	3379.4	3313.9	3430.7
1613.5	1931.6	2126.8	2448.5	2943.8	3471.4	3933.6	3515.8	3379.0	3324.2	3249.7	3401.6
1613.5	1931.6	2126.8	2448.5	2943.8	3471.4	3933.6	3515.8	3379.0	3324.2	3249.7	3401.6

1.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액 <계속>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호주	3376.6	3962.0	4869.5	5282.2	5296.5	5047.1	4840.4	4744.4	5540.5
오스트리아	5277.6	6550.6	7024.1	6803.2	8518.1	8907.7	10270.7	10038.6	10695.5
벨기에	5298.4	6684.2	7022.6	6780.4	8543.8	8774.9	9644.3	9522.4	10414.4
캐나다	4772.8	5596.7	6380.5	7167.5	7554.9	7804.3	7406.1	7038.8	6975.2
체코	-	-	-	-	-	-	-	1453.0	1642.5
덴마크	8161.6	10272.6	10924.5	10361.5	12375.7	12242.1	13526.2	12995.7	14448.9
핀란드	6023.7	7199.9	9253.9	9963.1	12179.0	11334.6	9821.1	7659.9	9239.2
프랑스	5655.6	6899.6	7337.5	7292.1	8982.7	9020.7	9815.8	9268.3	9866.7
독일	5480.5	6886.1	7318.5	7291.3	8703.0	8148.7	9457.8	9129.3	9799.6
그리스	1433.5	1692.9	1768.0	1769.5	2385.7	2551.1	2891.4	2738.3	2950.2
헝가리	-	-	-	-	-	1498.3	1663.7	1761.3	1797.1
아이슬란드	4586.3	6348.7	7532.3	6942.5	7739.5	8260.2	8587.7	7213.7	7241.2
아일랜드	2785.3	3305.7	3817.6	3635.0	4516.8	4615.1	5192.4	4840.4	5426.2
이탈리아	3836.3	4839.6	5437.2	5811.4	7554.0	8051.3	9036.9	7560.9	7414.2
일본	4697.8	5953.5	7263.8	7282.5	7313.9	8117.2	8300.1	9409.0	10009.7
한국	432.0	548.4	731.1	940.1	1163.6	1318.0	1395.0	1556.0	1835.6
룩셈부르크	6734.5	8373.5	9054.5	9336.7	11829.2	12107.9	13565.3	14535.9	15969.9
멕시코	295.6	333.9	386.4	478.3	559.9	641.1	744.1	811.9	811.9
네덜란드	5505.3	7042.3	7470.6	6910.1	8461.1	9088.4	9919.4	9634.7	9814.1
뉴질랜드	2925.1	4035.5	4745.0	4909.9	4805.5	4337.1	4169.6	4505.6	5292.9
노르웨이	8241.4	9427.8	10031.8	9649.5	11368.7	11543.3	12067.8	10809.7	11711.2
폴란드	-	-	-	-	-	744.2	840.7	949.2	1038.8
포르투갈	975.9	1145.5	1434.8	1587.5	2086.1	2465.1	3181.4	2670.3	2872.2
슬로백	-	-	-	-	-	-	-	-	-
스페인	1818.6	2444.7	2892.1	3365.1	4318.9	4677.4	5262.0	4244.1	4284.8
스웨덴	8336.2	10642.6	11812.2	12484.5	14922.4	14911.0	14566.3	10681	11481.0
스위스	5824.4	7164.1	7774.9	7234.8	9029.7	8953.8	9404.0	9263.4	10380.4
터키	258.1	312.0	301.1	364.5	536.9	553.2	611.1	687.5	479.7
영국	3768.6	4456.1	5409.6	5360.4	6310.4	6350.7	6386.5	5543.1	6076.3
미국	4686.5	5136.3	5444.2	5852.3	6286.3	6347.1	6584.3	6885.2	7331.7
OECD TOTAL	4276.5	5279.0	5901.5	5956.0	7051.6	6729.0	7112.6	6488.0	6994.5
OECD AMERICA	3251.6	3689.0	4070.3	4499.4	4800.4	4930.8	4911.5	4912.0	5039.6
OECD PACIFIC	2857.9	3624.9	4402.3	4603.7	4644.9	4704.9	4676.3	5053.7	5669.7
OECD EUROPE	4736.9	5878.3	6506.2	6470.7	7913.8	7371.4	7891.1	6963.7	7502.0
EUROPEAN UNION (15)	4739.4	5895.7	6531.9	6583.4	8112.5	8216.4	8835.8	8070.9	8716.9
EUROPEAN UNION (19)	4739.4	5895.7	6531.9	6583.4	8112.5	7381.7	7943.6	6957.0	7512.9

주: 시장환율로 환산한 US 달러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079.3	6823.4	6725.4	6083.9	6669.9	6448.9	5772.8	6549.0	8342.8	10159.0	11098.0	11586.0	13803.0
12391.1	12588.0	11492.0	11764.9	11612.3	10315.5	10667.8	11209.7	13546.5	15336.0	15615.0	16304.0	18875.0
12232.6	11944.9	10923.6	11326.7	11226.0	10177.1	10118.9	10979.8	13319.5	15463.0	16051.0	16772.0	18933.0
7208.1	7539.8	7914.7	7592.8	8105.0	8562.2	8037.6	8139.8	9338.8	10600.0	11927.0	13213.0	17585.0
2006.7	2162.0	2014.7	2095.9	2097.9	1950.4	2155.9	2678.8	3343.8	4056.0	4575.0	5143.0	6297.0
17071.4	17313.2	15850.2	16210.4	16428.9	14851.4	14560.1	15514.8	18929.2	22212.0	24166.0	24947.0	27638.0
11689.8	11779.7	11093.0	11648.5	11584.3	11110.4	10727.8	11614.7	13896.6	15723.0	16388.0	17298.0	19995.0
11339.5	11648.0	10560.2	10837.3	10904.9	9708.5	9642.6	10291.0	12556.8	14348.0	14941.0	15847.0	17646.0
11497.4	10874.1	9530.0	9700.3	9690.6	8598.5	8275.1	8667.8	10509.4	11574.0	11767.0	12585.0	14581.0
3576.8	4663.6	3825.2	4036.2	4256.4	3967.4	3915.4	4506.2	5612.1	6476.0	6950.0	7540.0	8938.0
1833.0	1783.4	1734.6	1778.7	1834.4	1783.8	1986.2	2481.3	3122.6	3797.0	4080.0	4164.0	5457.0
8186.0	8804.9	8826.7	10729.7	11981.7	11766.7	10059.2	11180.4	14290.9	17285.0	22396.0	22694.0	26659.0
6049.5	6624.1	7044.0	7433.5	8115.7	8034.0	8000.8	8799.5	11318.8	13652.0	14761.0	16428.0	18444.0
7884.3	9179.5	8958.2	8823.1	8860.9	8034.4	8075.4	8704.1	10889.0	12191.0	12389.0	13276.0	15478.0
11284.1	9958.8	9135.9	8144.9	9103.3	9947.9	8692.8	8020.7	8577.6	9479.0	9789.0	9619.0	9714.0
2229.1	2455.6	2356.4	1571.2	2053.9	2564.8	2450.2	2802.6	3221.2	3486.0	4169.0	4923.0	5745.0
18686.8	18594.4	17294.0	17880.4	18806.2	18133.8	18160.5	19886.3	24785.2	28044.0	30412.0	32257.0	37949.0
528.8	603.0	744.9	728.0	857.2	1087.1	1166.5	1155.5	1184.2	1260.0	1474.0	1649.0	1734.0
11254.9	11021.5	10122.2	10028.1	10441.6	9591.9	9511.2	10170.2	12248.0	13975.0	15066.0	16130.0	17788.0
6142.4	6298.8	6180.8	4882.6	5087.2	4666.9	4459.9	5304.6	7032.6	8749.0	10008.0	9695.0	11039.0
13966.9	14933.2	14909.4	14463.1	15225.2	16065.7	16343.7	18352.3	20978.7	24385.0	28436.0	31779.0	36013.0
1307.1	1466.1	1432.2	1546.6	1405.3	1412.3	1671.2	1737.6	1874.6	2210.0	2628.0	302.0	3883.0
3590.2	3876.2	3630.3	3876.6	4068.0	3789.4	3794.2	4257.7	5230.6	5759.0	6107.0	6573.0	7666.0
-	-	-	1575.6	1359.5	1288.7	1271.0	1488.9	1885.6	2465.0	2796.0	3043.0	4087.0
4849.5	5013.5	4746.5	5019.1	5279.4	5017.4	5127.0	5778.6	7311.2	8475.0	9308.0	10230.0	11933.0
13646.5	15437.4	14446.9	14603.4	14866.6	14564.5	12786.2	13556.3	17024.0	19348.0	20057.0	21241.0	23938.0
12367.1	12073.1	10288.2	10907.2	10739.4	10401.0	10314.5	11326.8	12823.1	14036.0	14486.0	15190.0	16463.0
619.7	735.7	830.1	877.4	878.3	954.6	745.7	822.1	1110.7	1315.0	1626.0	1784.0	2109.0
6848.7	7103.0	8016.4	8868.7	9154.3	9164.2	9062.0	9403.8	10735.2	12818.0	13524.0	14700.0	16635.0
7671.5	8142.9	8682.8	9210.5	9696.0	10335.2	10183.7	9524.3	9624.1	10305.0	11487.0	12265.0	12871.0
8070.3	8325.6	7907.2	7808.2	8079.7	7809.8	7591.2	8163.5	9822.1	11299.0	12283.0	13063.0	14896.0
5136.1	5428.6	5780.8	5843.8	6219.4	6661.5	6462.6	6273.2	6715.7	7388.0	8296.0	9042.0	9730.0
6433.7	6384.2	6099.6	5170.7	5728.6	5907.1	5343.9	5669.2	6793.6	7968.0	8773.0	8956.0	10075.0
8768.0	9073.6	8525.9	8523.1	8731.2	8290.5	8129.2	8843.9	10754.0	12389.0	13414.0	14301.0	16409.0
10173.9	10510.7	9835.5	10137.1	10353.1	9670.6	9495.0	10222.7	12527.5	11996.0	12715.0	13552.0	15587.0
8764.2	9059.6	8484.1	8371.3	8526.0	7973.3	7868.9	8511.9	10428.4	14360.0	15167.0	16142.0	18429.0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찬반’ 논쟁

국회 선진정치경제포럼(공동대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토론회에서는 임투공제 폐지 문제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투자지원제도로, 일몰제에 의해 2011년 폐지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투공제 폐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또 이를 대체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를 낮추기보다 차제에 임투공제의 임시 폐지를 떼어내 정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임투공제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대한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현행 임투공제 유지 ▲투자금액의 5%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큰 금액의 공제 등 임투공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장지중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업 조세부담 증가, 기업 투자위축, 지방·수도권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 등을 꼽고, “설비투자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폐지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태화 경원대 교수는 “임투공제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 단계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중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투공제는 82년 도입 이후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돼 한시적 지원제도라는 특성이 사라졌고, 기업의 투자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완화 조치로 보기에 적용 대상이 좁다”며 “따라서 임투공제를 폐지,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11-09일자〉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검토할 시점

한국조세연구원 · 신용정보협회 토론회서

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후 시내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신용정보협회와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행정인력의 충원이 쉽지 않지만 체납건수가 매우 많은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체납 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4천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천억원)의 6.9%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기준 국세청 관할 내국세 미정리 체납액(3조9천80억원)의 87.2%에 달한다. 국세는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은 1.8%였다.

그는 "지방세 체납의 문제가 국세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체납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세청과는 달리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은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로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며 "차선책 또는 보완책으로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 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활동은 거소지 확인, 재산조사, 체납 통지 등 사실행위에 한해 세무공무원의 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한을 뒀다.

또 "납세자의 비밀유지 및 권익보호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려면 관련 법률 규정의 보완과 민간 추심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및 위탁기관의 합리적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은 부실채권의 회수가 사회적

문제가 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발전해 현재 35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며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27개다.

올해 5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합뉴스 2010-11-02일자〉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찬반 팽팽

조세연구 "위탁 검토 시점" 납세자연맹 "사생활 침해"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효율적인 징수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등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놓고 제도 도입의 찬반이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다.

2일 조세연구원과 신용정보협회는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체납 건수가 매우 많다는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체납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 2008년 기준 3조4,0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000억원)의 6.9%에 달했다. 반면 국세는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이 1.8%였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의 문제가 국세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납 업무 민간 위탁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체납자의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위협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민간 위탁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해도 강력한 제재수단을 쓸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 2010-11-03일자)

2050년 보건·복지 지출 GDP 20% 넘어서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복지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과제’ 논문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3% 미만, 2040년대 1% 내외로 하락하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에는 21.6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보건 부문은 2009년 2.88%에서 2050년 5.29%로, 복지 부문은 2009년 6.64%에서 2050년 16.31%로 2.5배나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4.16%에서 7.03%로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도 0.50%에서 1.13%로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은 이런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한 뒤 2050년까지의 정부 재정을 추계한 결과, 2050년에는 국가재무비율이 유럽 국가(125%)와 비슷한 GDP 대비 11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2010-11-01일자)

공공기관 부가가치 34조~37조원 창출

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8년 기준으로 33조 9천억~37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3.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6~2007년에는 증가했지만 2008년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경제위기 등에 따라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란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8년 기준 297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270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5년에는 38조6천억~40조4천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3조9천억~37조3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5~4.7%에서 2008년에는 3.3~3.6%로 낮아졌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24개)의 부가가치는 2005년 24조5천억~25조8천억원으로 추정됐지만 2008년에는 21조4천억~23조7천억원으로 2조~3조원 정도 줄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는 2005년에 12조5천억~13조4천억원으로 공기업 부가가치 총액의 절반 정도를 점유했으나 2008년에는 7조4천억~8조2천억원으로 공기업 부가가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발전원가가 올랐으나 전력 가격이 동결되거나 인상이 억제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5년 14조1천억~14조7천억원에서 2008년 12조5천억~13조5천억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1980~1985년의 9.1~9.4%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KT와 KT&G, 포스코 등의 민영화 영향과 민간부문의 고도성장, 경제위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GDP 비중 하락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 현상과 국민후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위기상황(경제위기, 고유가 등)에서 적절히 작동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영화 등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최근 수익성에 기초한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연계되지 않으면 잘못된 평가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부가가치만을 강조하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감소하고 인건비 과다지급을 통한 방만경영 가능성과 문어발식 확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부가가치 지표와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절한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2010-10-21자〉

• 2006 •

2006년 1월호(통권 제115호)

〈권두칼럼〉

2006년도의 한국경제와 조세·재정정책/ 최용선

〈현안분석〉

-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김종면
-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정재호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개인소득세제 변경 외

〈정책흐름〉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 규칙 개정(안)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2006년 경제운용방향

〈재정통계〉

지방재정 1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양극화, 정치선전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외

2006년 2월호(통권 제116호)

〈권두칼럼〉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불명확성 / 김완석

〈현안분석〉

- 경매를 통한 조달효율성 제고에 대한 소고/ 김 진
-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과 발전방안/ 김현아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외

〈정책흐름〉

2005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2005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관련 추가설명

2005년 국세수입 실적(05년도 총세입 세출부 마감 관련)

06.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금년 정부 R&D 투자 전년 대비 14.2% 증가

〈재정통계〉

지방세 4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자영업자 과세기반 확대 실효 거들거 외

2006년 3월호(통권 제117호)

〈권두칼럼〉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이준구

〈현안분석〉

-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박기백
-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정책토론포트〉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완석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미·일·중·인도 등 양극화 해소 어떻게 외

〈정책흐름〉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2005년 수출입 동향(학정지)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재정통계〉

지방세 5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외

2006년 4월호(통권 제118호)

〈권두칼럼〉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에 대한 대책/ 김동건

〈현안분석〉

- 납세협력도 상승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성명재
-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류덕현

〈해외동향〉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배경과 전망/ 김유찬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디지털, 재정건전성 위한 소비세 도입 시사 외

〈정책흐름〉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05년말 국가채무 현황

2005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결과

2005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07년 재정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에 중점

〈재정통계〉

GDP 대비 총조세 비중

〈이런의견 저런생각〉

론스타 과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외

2006년 5월호(통권 제119호)

〈권두칼럼〉

조세비용의 관점에서 본 재정개혁/ 전주성

〈현안분석〉

-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홍백교
-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김현숙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4대 중점산업 재생에 특별 감세안 추진 외

〈정책흐름〉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근로소득지원세제(ETC)세명칭 공모

전국 871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이런의견 저런생각〉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 외

2006년 6월호(통권 제120호)

〈권두칼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세 가지 오해/ 송대희

〈현안분석〉

-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고찰/ 최준욱
- 법인-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효과 분석/ 민희철
- 갭블관련 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김현아

<정책연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성명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박기백 김현아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원종학 김종면 김형준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홍범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 이진규 김진수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 회피와 그 대응방
안/ 노영훈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일, 법인세 육아비 줄이고 소비세 인상 외

<정책흐름>

부담금 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이런의견 저런생각>

성공적 FTA의 조건 외

2006년 7월호(통권 제121호)

<권두칼럼>

결과중심의 예산사업 성과관리/ 최용선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재정포럼』에 바란다/ 최 광 외

<현안분석>

•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종면

•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박노욱

<정책토론포트>

우리 현실에 맞는 ETC 실시방안

<정책흐름>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日, 경기 좋을 때 세금 더 걷는다 외

<정책흐름>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200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 외

<권말부록>

『재정포럼』 총목차(창간호~120호)

2006년 8월호(통권 제122호)

<권두칼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조화/ 박완규

<현안분석>

적대적 M&A와 관련한 조세문제의 검토/ 김진수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류
덕현

<정책토론포트>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정책연구>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우철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최준욱 류
덕현 박형수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안종석 권오성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정재호 이명
현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노욱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페루 FTA, 미 의회 승인만 남아 외

<정책흐름>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담 경감

2006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대폭 증가

2006년 2/4분기 실질 GDP(속보치) 평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인터넷 조회만으로 간단히

<재정통계>

OECD국가의 총조세수입

<이런의견 저런생각>

비과세 감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외

2006년 9월호(통권 제123호)

<권두칼럼>

글로벌 임밸런스하의 재정운영/ 김준영

<현안분석>

• 조세 이전소득의 분포/ 성명재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
석/ 김우철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이기영

<특별기획-2006년 세계개편안>

주요내용: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
점/ 김낙희

평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 박정수

평가: 세원투명성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전병목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세계 6대 조세피난처의 잇달리는 명암 외

<정책흐름>

2006년 세계개편안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계개편안 배경과 국제행정의 합리화 외

2006년 10월호(통권 제124호)

<권두칼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구정모

<현안분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김
승래

• 1999년 국제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
점/ 박명호·박노욱

<특집: 2007년 예산안>

2007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노형욱

2007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Ⅰ) / 임주영

2007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 박형수

<기고>

제3차 OECD 국제청장회의의 성과와 의의/ 이승재

<기획>

200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민희철

<해외동향>

OECD의 『Revenue Statistics』(2006년판) 발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주택경기 침체 美GDP 1% 낮출 것 외

<정책흐름>

2007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07년 국제 세입예산(안)

<재정통계>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경제 위기관리의 절실하다 외

2006년 11 월호(통권 제125호)

<권두칼럼>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회계참여' 제 도입 시급하다/ 임항순

<현안분석>

-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 정재호
-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민희철

<기획>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 외

<정책흐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외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미시적 처방에 쏠린 부동산 대책 외

2006년 12월호(통권 제126호)

<권두칼럼>

2만달러 문턱을 넘으려면/ 강응선

<현안분석>

-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장기우대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홍범교
-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김현숙

<정책토론포트>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김완석

<해외동향>

일본 세제조사의 세제개편 건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2007년도 미국의 소득공제 등 조정내용 외

<정책흐름>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내년 정책방향

OECD, 경제전망 발표

재정보전금제도 개선으로 시·군간 재정형평화 효과 제고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및 총조세 대비 소득과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 민생예산 충분히 반영돼야 외

2007년 1월호(통권 제127호)

<권두칼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 최용선

<현안분석>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박노욱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사점/ 원종학
-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김우철

<정책토론포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2007년 중수출입관세를 어떻게 달라지나 외

<정책흐름>

2007년 경제운용방향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건물기준시가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2007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 외

2007년 2월호(통권 제128호)

<권두칼럼>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유일호

<현안분석>

- 재정혁신의 평가 및 향후 과제/ 김종면
- 형평화보조금에 대한 논의/ 김현아

<정책토론포트>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역대 기업활동 활성화 위해 세계개혁 추진 외

<정책흐름>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

'07년 국제발행 및 국제시장 활성화 계획

'06년 재정집행실적 예년에 비해 대폭 개선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원천징수 재산과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정치권 결단해야 외

2007년 3월호(통권 제129호)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부담이란?/ 원윤희

<현안분석>

-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박형수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전병목

<정책토론포트>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도미니카공화국 간 FTA 발효 외

<정책흐름>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 보고
한· 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경제교류 전망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조세피난처 더 이상 설 곳 없다 외

2007년 4월호(통권 제130호)

<권두칼럼>

예산과정과 예산정치/ 신해룡

<현안분석>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김진수
-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성명재

<정책토론포인트>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정책연구>

기업인수· 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이준규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 성명재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
수· 류덕현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최신 조세· 재정 해외동향>

영국소득· 법인세 2%p 인하 외

<정책흐름>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한· 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근로장려세제(E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II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시장실패적 현상과 정부정책의 색깔 외

2007년 5월호(통권 제131호)

<권두칼럼>

재정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 박태규

<현안분석>

- 주택시장 가격정책에 대한 소고/ 노영훈

- 배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
로/ 김 진

<정책연구>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
박순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안종석 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정훈· 김
현아

<최신 조세·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일본 기업에 이중과세 철폐 외

<정책흐름>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주택 양도시 비교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금년도 재산세 평균
5.3% 오른다

<재정통계>

총재정 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한· EU FTA의 성공전략 외

2007년 6월호(통권 제132호)

<권두칼럼>

조세문화의 창달/ 이만우

<현안분석>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소고/ 안종석
-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
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정재호

<정책연구>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현
숙· 류덕현· 민희철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종석· 홍범교

한국의 조세· 재정정책 평가 모형/ 김승래

국제기본법 개편방안/ 김완석· 한상국· 박 훈

<최신 조세·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전가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표

OECD, 경제전망 발표

<재정통계>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외

2007년 7월호(통권 제133호)

<권두칼럼>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이인실

<현안분석>

-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 홍범교
- 기존여성과 소득세: 최저조세이론 관점/ 김현숙

<정책토론포인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해외동향>

일본의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

<정책연구>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최신 조세·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외

<정책흐름>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국제법령정보시스템」개통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표

<재정통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불투명한 NGO 회계 기부문화 죽인다 외

2007년 8월호(통권 제134호)

<권두칼럼>

개방과 국제환경의 변화/ 장근호

<현안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김현아
- 소득세 누진구조의 효과와 한계/ 최준욱

〈정책토론포트〉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신용카드에 의한 국제 납부제도 도입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클린 에너지법, 美 하원 통과 외

〈정책흐름〉

경유 및 LPG 부탄 세율 조정 적용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7 지방세법 개정 추진

〈재정통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령화의 '해법' 주택연금 외

2007년 9월호(통권 제135호)

〈권두칼럼〉

우리나라 국제행정의 현재와 미래/ 김유찬

〈현안분석〉

-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박 노옥
-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 원종학

〈특별기획〉

2007년 세제개편의 방향 및 주요내용/ 김낙희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Ⅰ)/ 이철인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Ⅱ)/ 전병목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日, 소비세 1%p 인상추진...연금재원 확보 위해 외

〈정책흐름〉

2007년 세제개편(안)

금년도 국제징수 실적 호조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재정통계〉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외

2007년 10월호(통권 제136호)

〈권두칼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김동건

〈현안분석〉

- 수의자부담 원칙의 이해/ 박상원

- 경쟁위탁(competitive sourcing)의 이해와 현황/ 김진

〈특별기획〉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김용호

사회적 투자의 활성화를 실행하는 2008년 예산안/ 이원희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우석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재무·상무부, 인터넷서비스 과세 영구유예 요청 외

〈정책흐름〉

내년도 예산 257.3조원 편성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도입 추진

2008년 국제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제수입 전망

'세금부담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나...

지방세 비교세·감면현황 일제 조사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가능별 지출액(연도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수익률 2%p 상승, 갈 길 먼 국민연금 외

2007년 11월호(통권 제137호)

〈권두칼럼〉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 유일호

〈현안분석〉

-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성명재

-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전병목

〈특별기획〉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김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EU, 에탄올 면세 브라질案 거부 외

〈정책흐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외

2007년 12월호(통권 제138호)

〈권두칼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 온기운

〈현안분석〉

- 지방정부 재정위기관리에 대한 논의/ 김현아

-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 민희철

-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민주 주자들 중산층 논쟁...오바마 과세확대 주장에 힐러리 반대 외

〈정책흐름〉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2008년 경제전망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총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대선과 새해 예산안 외

2008년 1월호(통권 제139호)

<권두칼럼>

헤안이 필요한 올해 경제전망/ 최홍식

<현안분석>

-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 전병목
-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민희철

<정책토론회리포트>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성장 덕에 세수도 빠른 증가 외

<정책흐름>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2008년 상반기 기준 예산의 62.4% 배정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7,637억원 재정성과 제고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이슈 & 포커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토끼잡기 3대 딜레마 외

2008년 2월호(통권 제140호)

<권두칼럼>

부동산정책과 실용주의/ 전형수

<현안분석>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손원익
-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박노욱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투자기업, 10년 안 돼 청산뎌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외

<정책흐름>

2007년 국제징수 실적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자동차세 세율규간 축소 및 세율 인하

<재정통계>

조세체계의 변천 외

<이슈 & 포커스>

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외

2008년 3월호(통권 제141호)

<권두칼럼>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안종범

<현안분석>

-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김중면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요청모형에 대한 소고/ 전병힐

<정책토론회리포트>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제개편 금융살 외

<정책흐름>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국가회계법」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재정통계>

국제·지방세 비중 추이 외

<이슈 & 포커스>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

2008년 4월호(통권 제142호)

<권두칼럼>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 오연천

<현안분석>

-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김진수
-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 김 진
-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박명호

<정책토론회리포트>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상원, 주택시장 부양 세금 공제안 통과 외

<정책흐름>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2008년 OECD 통계연보(FackBook) 발간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08년 긴급할당관계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국제행정 성과, 국민이 평가

<재정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슈 & 포커스>

근로자가구 10% "일해도 빈곤층" 외

2008년 5월호(통권 제143호)

<권두칼럼>

비람직한 신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김성태

<현안분석>

-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김승래
-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조진권

<정책토론회리포트>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정책연구>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박기백·박상원·손원익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박형수 외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김정훈·김현아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김재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1억 3천만가구에 세금 환급 외
 <정책흐름>
 '08. 1분기중 (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조세감면제도의 대목 정비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재정통계>
 내국세 납세 인원 외
 <이슈 & 포커스>
 재정부 법인세는 낮춰도...소득세 인하 고려 안 해 외

2008년 6월호(통권 제144호)

<권두칼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민영화만이 해법인가?/ 김동진
 <현안분석>
 •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연계성으로 살펴본 소득재
 분배의 정책방향/ 성명재
 •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 전병목
 •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 대체효과 추정/ 송호신
 <정책연구>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안종석 · 전병목
 출산을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
 책/ 우석진 · 민희철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노영훈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원종
 학 · 성명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김
 승래 · 박명호 · 홍범고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종면 · 김우철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김형준 · 박명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유로존 재무장관, 유류세 인하 반대 외

<정책흐름>
 근로자·지역일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정책
 '08년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
 수제도 폐지를 2008. 6. 1. 시행함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국제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재정통계>
 조세법칙 조사 실적 외
 <이슈 & 포커스>
 국민연금 등 공적지출, 5년새 54.4% ↑ 외

2008년 7월호(통권 제145호)

<권두칼럼>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이만우
 <현안분석>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박기백
 •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제도의 개선방향/ 김
 재진
 <정책토론포트>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정책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김승
 래 · 박명호 · 홍범고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종면 · 김우철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손원익 · 박태규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러시아 등 식량수출 규제 완화 외
 <정책흐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경제안정 종합대책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도 관련 입장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유도
 <재정통계>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하반기 경제운용> 소득세율 1%p 인하되나 외

2008년 8월호(통권 제146호)

<권두칼럼>
 활기찬 시장경제 정권교체 정체성에 길이 있다/ 배
 병휴
 <현안분석>
 •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김종면
 •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 전병철
 <정책토론포트>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해외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 세무환급 효과 반짝 외
 <정책흐름>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재정사업 발주 현황
 '07년도 경영평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
 영권실질 본격 착수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08.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갑급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납부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
 지방재정에대한 공공증, 한 번에 본다
 <재정통계>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교육세·농특세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외

2008년 9월호(통권 제147호)

<권두칼럼>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로 정권 정체성 찾아야/ 추창근

<현안분석>

-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산안 분석/ 박노욱
-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원종학
- 한국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실증 분석/ 김지영

<기획특집>

2008년 세계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최영록
 2008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I / 손원익
 2008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II / 이영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주택경기촉진법 시행 외

<정책흐름>

2008년 세계개편안)

'08년 세계개편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국제청에서 찾아드립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재정통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원윤희 조세연구위원장 "부동산 투기 잡는 데 세금 쓰면 곤란" 외

2008년 10월호(통권 제148호)

<권두칼럼>

기본에 충실한 정책연구를 기대하며/ 전주성

<현안분석>

- 조세·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명재
- 국방조달계약에서의 비용절감유인/ 김진
-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박명호

<기획특집>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조규홍

2009년 예산안 평가 I / 박정수

2009년 예산안 평가 II / 송호신

<정책토론펠리포트>

2008년 세계개편안에 관한 정책토론펠리

<주요국의 조세동향>

중국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대한 세부요건 외

<정책흐름>

2009년 예산안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

2009년 국제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제세수입 전망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

일일당당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제청이 도와드립니다.

<재정통계>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유가환급금 지급시 GDP 0.05%↑" 외

2008년 11월호(통권 제149호)

<권두칼럼>

적극적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온기운

<현안분석>

- 영국의 정부간 자원배분 현황과 시사점/ 안종석
- 정부지출의 국제비교/ 박기백
- 비관장재(demerit goods) 관점에서 본 담배·주류·갬블 과세/ 박상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수웨덴 수상 감세안 발표 외

<정책흐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한·미 양국간 통화스와프 체결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재정통계>

업종별 표준소득을 조정 현황(1987~2001) 외

<이슈 & 포커스>

"소득세 등 '직접세 감세' 양극화 키운다" 외

2008년 12월호(통권 제150호)

<권두칼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정책/ 이인실

<현안분석>

-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손원익

• 재정수지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 김우철

• 카드결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호주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재진

<정책토론펠리포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성과 및 과제

<주요국의 조세동향>

아일랜드 2009 예산안 외

<정책흐름>

세법 개정에 따른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및 08년 주택분 중부세 세부담 변동사례(환급금액)

2008년도 조세감면액(잠정)

IMF, 아시아지역 경제성장 전망 발표

최근 감세안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정리

2008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 분석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안내

예산성자금, 지역주민에게도 지급한다

<재정통계>

양도소득세 부과 외

<이슈 & 포커스>

4대 정책연구 원장 경제진단 "위기상황 아래선 타이밍이 가장 중요" 외

2009년 1월호(통권 제151호)

<권두칼럼>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원윤희

<현안분석>

• 국제비교를 이용한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평가/ 김현아

• 사회 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박노욱

•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김종면

<정책토론펠리포트>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해외동향>

독일의 2008/2009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주요국의 조세동향>

독일 상속세법 개정 외

〈정책흐름〉

2009년 경제운용방향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계획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재정통계〉
법인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외

2009년 2월호(통권 제152호)

〈권두칼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영화/ 송대희

〈현안분석〉

-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 분석/ 김우철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송호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전병필

〈해외동향〉

2009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주요국의 조세동향〉

프랑스 경기부양 종합대책 외

〈정책흐름〉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2008년 국제징수 실적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

유기환급금 수령자 설문조사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재정통계〉

업종별 법인 수 외

〈이슈 & 포커스〉

“자본소득 세제 일원화를” 외

2009년 3월호(통권 제153호)

〈권두칼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고/ 박윤규

〈현안분석〉

-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진
-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박명호

〈기획〉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정책토론 리포트〉

주요국 국제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우대혜택 제공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재정통계〉

법인세 환급금 외

〈이슈 & 포커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장 1%p 올리려면 최대 20조 필요” 외

2009년 4월호(통권 제154호)

〈권두칼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한다/ 임주영

〈현안분석〉

- 가계소득구성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기여도 분석: Shorrocks 분해를 중심으로/ 성명재
-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 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조명환

- 양도소득 증과제도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박명호

〈정책연구〉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성명재·강신욱·이철인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성명재·박상원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김우철·이우진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

간접투자세제의 개선방안/ 홍범교·김재진·김진수·전병목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김지영·박상원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전병목·박명호·김완석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조세회피방지 노력 외

〈정책흐름〉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0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부담 줄여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추가배정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탄소세 도입하고 환경세는 통합 외

2009년 5월호(통권 제155호)

〈권두칼럼〉

경제패러다임 시프트/ 김준영

〈현안분석〉

- 탄소세 도입과 경제적 효과/ 김승래

-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제도의 비교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정재호

〈정책연구〉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김승래·김형준·이철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박노옥·원종학·김진·박명호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박노옥 외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김정훈·김현아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김승래·박상원·김형준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안중석
<정책토론포인트>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국제조세 관련 조세개혁 방안 발표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대한 IMF 전망 관련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
내년 재정목표 '위기 후 기회 선점·재정건전성 확보'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전국 지방세 고지서 전자메일로 받아요!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조세연구원장 "양도세 종과폐지 필요"외

2009년 6월호(통권 제156호)

<권두칼럼>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강응선

<현안분석>

-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김정훈
- 골프장의 조세문제/ 노영훈
-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김재진

<정책연구>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원종학·김중
면·전병hil·우석진

관세를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재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김봉근·
김정권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성명재·전병목·전병hil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호

과 연구/안중석·이상협·전영준·김진

<주요국의 조세동향>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외

<정책흐름>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2009년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아이 안 낳는 코리아 '재앙폭탄' 재깍재깍 외

2009년 7월호(통권 제157호)

<권두칼럼>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최홍식

<현안분석>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박노옥
-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서울시
와 세계의 대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아

<정책토론포인트>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 방안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에 따른 기본관세를 개편방안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주요국의 조세동향>

대만 법인세 및 조세징수법 개정 외

<정책흐름>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117.5조원 집행, 목표 대비
106.8% 달성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외

<이슈 & 포커스>

조세감면 증가율, 국제수입 증가율 상회 외

2009년 8월호(통권 제158호)

<권두칼럼>

성급한 주택정책 전환은 시기상조/ 손재영

<현안분석>

-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탄력성
추정/ 김지영
-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일고/ 김진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진수

<정책토론포인트>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스위스 탄소세를 3배 인상 외

<정책흐름>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한-인도 CEPA 현상결과 및 기대효과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국제청 훌텍스 방문자 3억명 돌파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법인·소득세 감세 유지하되 공제는 축소" 외

2009년 9월호(통권 제159호)

<권두칼럼>

녹색성장과 새 문화창달을 위하여 철도 투자는 확대
되어야/ 김동건

<현안분석>

- 획률적인 전망 방법을 이용한 국가채무 전망/ 송
호신

• 일반균형모형에서 Ramsey의 규칙에 대한 재해석/ 김형준

•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용사례와 시사점/ 박명호

〈특집〉
서민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 안택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장근호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총평 중심으로/ 박상원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박명호

〈기고〉
재산평가에 대한 소考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영국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외

〈정책흐름〉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
국세청,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2008년 세무조사 실적 공개

〈재정통계〉
주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녹색성장 바람직한 세제개편은..." 외

2009년 10월호(통권 제160호)

〈권두칼럼〉
친서민 친기업은 동반관계/ 배병휴

〈현안분석〉
•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 전병목
• 소득분배 동향 고찰/ 성명재

〈특집: 2010년 예산안〉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 안일환

2010년 예산안 평가/ 홍승현

〈정책토론티포트〉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중장기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

요 내용

2010년 국제 세입예산(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재정통계〉
상속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외국기업, 한국은 세금으로 가장 힘든 나라 외

2009년 11월호(통권 제161호)

〈권두칼럼〉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 곽태원

〈현안분석〉
• 부담금 증가를 조절 및 연체 가산금제도에 대한 소론/ 정재호
•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원종학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2009회계연도 예산실적 발표 외

〈정책흐름〉
0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교환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복권기금 10년 소외·취약계층에 7,600억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재정통계〉
상속세 결정 현황(2005~) 외

〈이슈 & 포커스〉
성장을·조세수입 전망 '늘쫘날쫘' 외

〈권말부록〉
최근 5년간 『재정포럼』 총무차

2009년 12월호(통권 제162호)

〈권두칼럼〉
'명품 세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 안종범

〈현안분석〉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김승래
•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식감 분석/ 박상원
•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한 국제적 주택시장 동향 분석의 가능성/ 노영훈

〈정책토론티포트〉
제1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정책흐름〉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2009년 국제감면 현황
재정조기집행, 경제 살리기의 미중물 역할을 담당
투기세력의 탈루소득!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시행
위택스에서 서울시 지방세도 신고·납부 가능

〈재정통계〉
증여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금 유통·관리, 거래소 설립 바람직 외

2010년 1월호(통권 제163호)

〈권두칼럼〉
첫째도 둘째도 투자 활성화이다/ 최광

〈현안분석〉
•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김현아
• 포이즌필(Poison Pill)의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그에 따른 조세문제/ 김진수

〈정책토론티포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주택구입 세액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연장 외

〈정책흐름〉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2010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2010년 예산 배경계획 및 집행지침 확정, 통보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 1. 1일 시행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재정통계>
 전화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임투공제 일몰, "반쪽짜리 연장" 외

2010년 2월호(통권 제164호)

<권두칼럼>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송대희
<현안분석>
 •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
 노옥
 • 재정성과의 제도적 접근/ 홍승현
 •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송호신
<공공정책포럼>
 제1회 공공정책포럼
<주요국 조세동향>
 일본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외
<정책흐름>
 2009년 국제징수 실적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일부 유럽 국가 재정위험 관련 영향과 대응방향
 근무조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180만원 지원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201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09년도 공기업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재정통계>
 교통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공공기관 일자리 만들기 적극 나서야" 외

2010년 3월호(통권 제165호)

<권두칼럼>
 국가부채 논란, 규모보다 관리능력이 관건/ 추창근

<현안분석>
 •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박명호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고선
 • 주택시장과 경제위기: 주택금융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노영훈
<해외동향>
 불법취득 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김유찬
<정책토론포트>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공공정책포럼>
 국가 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의 2011년 예산안 외
<정책흐름>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상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립니다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이슈&포커스>
 고용친화적 세제개편 절실 외

2010년 4월호(통권 제166호)

<권두칼럼>
 재정 건전성 논쟁, 기초부터 튼튼하게/ 전주성
<현안분석>
 •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성명재
 •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 평가/
 송한재
<정책토론포트>
 제1차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 및 발전 방향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방안
<정책연구>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성명재 · 박기백 공공기관의 역할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 · 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성명재 · 전영준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안중
 석 · 정재호
 담배 · 주류 · 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연구/ 박상원 · 민
 희철
 저탄소 · 환경친화적 사냥터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김승래 · 송호신 · 김지영
 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김
 승래 · 송호신 · 김우철
<주요국 조세동향>
 싱가포르 2010년 예산안 외
<정책흐름>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2010년 총액인건비제 개선 시행
 4월 1일부터 달지는 조세제도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 ·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훈령 공개로 국제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 제고
 2009년 귀속 단순 · 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재정통계>
 지방세 시도별 분포 외
<이슈&포커스>
 올해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호전 외

2010년 5월호(통권 제167호)

<권두칼럼>
 공익활동에 필요한 민간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언/ 박태규
<현안분석>
 • 매입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정
 재호
 • 준예산 편성의 이슈/ 김종면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이은경
<정책토론포트>
 국가 고용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정책포럼>
 존경받는 기업을 향한 우리의 노력
<정책연구>
 소득세제와 의료수요/ 전병목 · 성명재 · 신현웅 · 신
 영석
 국민연금 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박명호 · 전병힐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박형수·류덕현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진중
 중앙·대도시간 재정분권/ 김정훈·김현아
 지방재정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욱·원종학
 R&D 사업의 성과관리와 재정지원 개선 방안/ 박노욱·송호신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심태섭
 알기 쉬운 세법령 기초연구/ 김완석·김진수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의 고용지원법안(HIRE Act) 서명·발효 외
<정책흐름>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2010년 1/4분기 GDP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개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금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지방재정 조기집행 3월 말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이슈&포커스>
 "공공부문 일자리 유연화로 고용창출 필요" 외

2010년 6월호(통권 제168호)

<권두칼럼>
 국민 晝稅主義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 조용근
<현안분석>
 •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홍범교
 •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주요국 국가채무관리 형태 및 DMO 도입·운영의 효과/ 송호신
<정책토론포럼>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정책포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조세동향>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증간보고서 외
<정책흐름>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사항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시행
 공공기관 임원 보수 추이
 '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관련 기업구조개편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이슈&포커스>
 "기부확대 위해 美 모델 적극 도입하자" 외

2010년 7월호(통권 제169호)

<권두칼럼>
 지방선거 결과와 과제/ 박완규
<현안분석>
 •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 원종학
 • 자발적 협약의 이슈와 시사점: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중심으로/ 허경선
<기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김춘순
<정책토론포럼>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의 감면연장법안에 대한 논의 동향 외
<정책흐름>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세금관련 안내문·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지방세·관세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 없는 지방세 관리

<재정통계>
 취득세(징수실적) 외
<이슈&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제·탄소세 정부 '단계적 도입안' 검토 외

2010년 8월호(통권 제170호)

<권두칼럼>
 부동산과 허위익식/ 손재영
<현안분석>
 •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김진수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 박노욱
<정책토론포럼>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
<주요국 조세동향>
 영국 긴급예산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공공기관 경영지율권 확대 4개 시범기관 추진동향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6월말 현재 165.4조원(진도율 61.0%) 조기 집행
 국제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감

니다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재정통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외
<이슈&포커스>
 개인소득자 소득탈루율 23.6% 외

2010년 9월호(통권 제171호)

<권두칼럼>
 개구리에 관한 단상/ 임주영

〈한인분석〉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 고선
-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박명호
- 해외부동산투자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노영훈

〈특집〉

2010년 세계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안택순

2010년 세계개편안 평가/ 조명환

〈공공정책포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정책흐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계개편(안)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

태풍 "곤파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약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 도입으로 징수 강화

〈재정통계〉

GDP 대비 총조세 비중

〈이슈&포커스〉

조세연 "복지지출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외"

2010년 10월호(통권 제172호)

〈권두칼럼〉

한국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제/ 김성태

〈한인분석〉

-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주요 특징 및 요인별 분해/ 성명재
- 경영평가제도와 공기업의 수익성/ 김지영

〈특집〉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문성유

2011년 예산안 평가 및 정책과제/ 박형수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발표 외

〈정책흐름〉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편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년 세계개편안 수정사항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재정통계〉

OECD국가의 총조세수입 추이

〈이슈&포커스〉

예산심의 '공정 리더십' 발휘하길 외

이 내용들의 원문들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www.kjpf.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포럼

2010년 11월호 통권 제17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11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11호(통권 제17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